

무배당 ELS의 정석 변액보험

약관의 목차

03		가입자 유의사항
05		가입부터 지금까지 한눈에 확인하기
06		주요 민원사항
07		주요내용 요약서
09		보험용어 해설
11		무배당 ELS의 정석 변액보험
49		무배당 연금전환특약II
59		표준하체인수특약
65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69		약관 내 인용 조문

가입자 유의사항

보험계약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1. 보험계약관련 유의사항

☐ 보험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보험설계사 등에게 말로써 알린 경우는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청약서에 서면으로 알리시기 바랍니다.
-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안내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 변액보험

- 납입한 보험료 중 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및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을 제외한 금액만 펀드에 투자되어 운영됩니다.
- 이 상품은 실적배당형 변액보험으로 해지환급금이 특별계정(펀드)의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됩니다.
-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이 최저보증되지 않으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발생한 원금손실은 모두 계약자에게 귀속됩니다.

☐ 계약자적립금의 인출

매월 월대채공제액을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에서 차감하므로 계약자적립금을 인출하는 등의 경우에는 해지환급금이 감소하여 계약이 조기에 해지 될 수 있습니다.

☐ 세제관련

보험차익(만기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에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에 대한 이자소득세는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이 보험계약의 세제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세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예금자보호제도 관련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최저사망보험금 및 예금자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전환된 계약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2. 해지환급금 관련 유의사항

☐ 해지환급금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납입한 보험료 중 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및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을 차감한 후 운용·적립되고, 해지시에는 적립금에서 이미 지출한 계약체결비용 해당액을 차감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입자 유의사항

보험금 지급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 사망보험금의 최저보증

사망보험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최저보증합니다. 다만, 기본보험료의 감액 또는 계약자적립금의 인출 시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재계산합니다.

□ 목표수익률 채권형 펀드 자동변경

- 계약자는 보험기간 중 '목표수익률 채권형 펀드 자동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계약에 한하여 계약자적립금 전액을 글로벌채권형 펀드로 자동 변경하여 드립니다.
 1. 계약일 이후 3년이상 경과된 계약
 2. 계약자가 선택한 목표수익률에 도달한 계약
- 계약자는 120%, 130%, 140% 중 하나의 목표수익률을 선택해야 하며, 보험기간 중 변경할 수 있습니다. 목표수익률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text{목표수익률(\%)} = \frac{\text{계약자적립금}}{\text{「이미 납입한 보험료」}} \times 100$$

- 글로벌채권형 펀드로 자동변경 된 이후 다시 글로벌채권형 이외 다른 펀드로 펀드별 투입비율의 변경 및 계약자적립금의 이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계정전환

- 계약자는 보험기간 중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 경우 일반계정전환을 회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신청 받은 계약의 계약자적립금 전액을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이체하여 드립니다.
 1.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유효한 계약
 2. 계약일 이후 3년이상 경과된 계약
 3. 전환신청일 기준으로 해지환급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10% 이상인 계약
- 일반계정으로 전환된 계약자적립금은 전환일부터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적립됩니다. 일반계정으로 전환 시에는 다시 특별계정으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 일반계정으로 전환된 계약의 경우, 전환이후 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일반계정으로 전환한 계약에 대하여 회사는 최저사망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목표수익률 일반계정자동전환

- 계약자는 보험기간 중 '목표수익률 일반계정자동전환'을 신청할 수 있으며,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계약에 한하여 계약자적립금 전액을 일반계정으로 자금이체하여 드립니다.
 1.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유효한 계약
 2. 계약일 이후 3년이상 경과된 계약
 3. 계약자가 선택한 목표수익률에 도달한 계약
- 계약자는 120%, 130%, 140% 중 하나의 목표수익률을 선택해야 하며, 보험기간 중 변경할 수 있습니다. 목표수익률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text{목표수익률(\%)} = \frac{\text{계약자적립금}}{\text{「이미 납입한 보험료」}} \times 100$$

- 일반계정으로 전환된 계약자적립금은 전환일부터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적립됩니다. 일반계정으로 전환 시에는 다시 특별계정으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 일반계정으로 전환된 계약의 경우, 전환이후 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일반계정으로 전환한 계약에 대하여 회사는 최저사망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가입부터 지급까지 한눈에 확인하기

【Step1】보험상품 선택 및 상품설명

고객님의 가입목적에 맞는 보험상품을 선택하신 후, 보험안내자료를 교부받고 주요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 제18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Step2】청약서 작성

보험가입을 위해서는 청약서를 작성하여 주셔야 합니다. 청약서 작성시에는 계약전 알릴 의무, 피보험자 서면동의, 자필서명을 반드시 지켜주셔야 합니다. ⇒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

【Step3】보험계약체결(회사승낙)

회사가 고객님의 청약하신 사항을 심사하여 보험계약 체결을 승낙하는 절차입니다. 회사는 청약을 받고 제 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계약은 청약일, 건강진단을 받는 계약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 최종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제16조【보험계약의 성립】

【Step4】ELS형 펀드로의 추가납입 및 계약자적립금의 이전에 관한 사항(거치형에 한함)

ELS형 펀드의 파생결합증권이 조기(만기) 상환된 경우에 한하여 추가납입 및 계약자적립금의 이전이 가능합니다. ⇒ 제33조【계약자의 펀드 투입비율 선택 및 변경】, 제35조【계약자의 계약자적립금 이전】

【Step5】보험사고 발생 및 보험금의 청구

보험계약 유지 중 가입하신 보험상품 약관상의 보험사고가 발생하셨다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시고 보험금을 청구하세요. 구비서류 및 청구절차는 콜센터(1577-1112)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7조【보험금의 청구】

【Step6】보험금 지급심사 및 보험금지급

회사가 고객님의 청구하신 보험금의 지급여부를 심사하는 절차입니다. 회사는 보험금을 청구하신 날부터 3영업일 이내(단, 조사나 확인인 필요한 경우에는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해드리고 부득이 지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Q. 이 상품의 사망보험금 최저보증은 어떻게 되나요?

A. 사망보험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최저보증합니다. 다만, 기본보험료의 감액 또는 계약자적립금의 인출시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재계산합니다.

Q. 중도해지시 해지환급금은 어떻게 산출이 되나요?

A. 이 보험계약은 납입보험료 중 위험보장을 위한 위험보험료,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등이 차감된 금액이 특별계정에서 운용되고, 중도 해지시에는 특별계정적립금에서 해지공제금액(거치형에 한함)을 차감하므로 해지환급금은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으며, 특별계정수익률에 따라 차이가 발생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민원사항

유형 01	해지환급금 관련
내용	A고객은 목돈마련을 위한 금융상품을 알아보던 중 지인이었던 모집인 B씨에게 보험가입을 권유 받음 모집인 B씨는 A고객에게 해당 상품은 목돈마련에 유리하고 자금인출이 가능하며, 은행 상품 보다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고 A고객은 그 말을 믿고 청약서에 서명함 A고객은 가입제안서 및 증권, 약관 등 중요서류를 모두 수령하였으나 지인이었던 모집인 B씨의 설명을 믿었기에 전달받은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지 않음 보험 가입 후 긴급자금이 필요하여 해지할 때 수령 가능한 금액을 확인하던 중 최초 안내 받았던 내용과 달리 납입보험료에서 사업비가 공제되며, 중도 해지하는 경우 해지환급금이 납입 원금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하고 고객불만을 제기함
유의사항	보험계약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다른 계약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일부는 보험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어 해지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음
유형 02	변액보험상품의 투자손실 관련
내용	최근 저금리에 대한 불안 등으로 투자상품에 대해 고민 중이던 A고객은 지인의 소개로 모집인 B씨를 만나 상담을 받음 모집인 B씨는 이 상품은 펀드에 투자되는 투자형 상품이며, 향후 원금뿐만 아니라 은행수익을 보다 높은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고, A고객은 상품 가입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고 가입함 수개월이 경과한 후 우연히 청약관련 중요서류를 확인한 A고객은 이 상품이 보험상품이며 원금 또한 보장되지 않는 상품임을 알게 됨 가입 당시 보험상품이 아닌 투자상품으로 이해하였으며, 수익률이 과장되게 설명되어 오해하도록 하였다는 이유로 고객불만을 제기함
유의사항	이 상품은 계약자의 적립금이 펀드에 투자되는 투자형 보험상품으로 중도해지하는 경우 투자실적에 따라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

주요내용 요약서

1. 자필서명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계약 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보험설계사 등에게 말로써 알린 사항은 효력이 없으며,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가입하는 경우에는 서면을 통한 질문절차 없이 안내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신중하여야 합니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회사가 이를 알았더라면 보험계약의 체결을 거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리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항을 말합니다.

3.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험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보험계약의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보험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보험계약으로 보나, 상기 만 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4. 청약철회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보험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보험계약
-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

5. 계약의 취소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험회사는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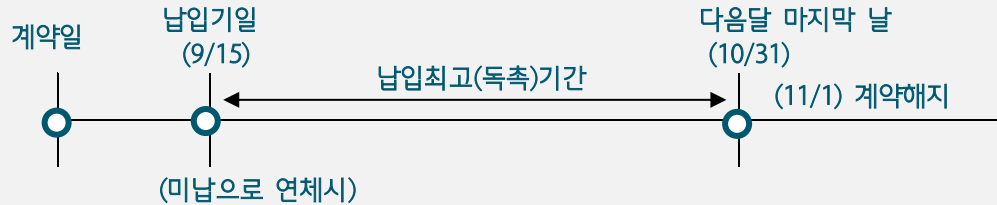
6. 보험료의 납입연체 및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는 경우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보험료의 납입을 최고(독촉)하고, 그때까지 해당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됩니다.

주요내용 요약서

다만, 당사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은 아래와 같이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마지막 날까지로 합니다.

(예시)



7. 계약의 소멸

피보험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이 보험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8.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보험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직업, 직종 등에 따라 승낙여부를 결정하며,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거나 보장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보험용어 해설

1. 보험약관

생명보험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상호간에 이행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것

2. 보험증권

보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

3. 보험계약자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

4.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

※ 보험사고란,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는 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고

5.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

6. 보험료

보험계약에 따른 보장을 받기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납입하는 금액

7. 보험금

피보험자의 사망, 장애, 입원, 만기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8. 보험기간

보험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

9. 보장개시일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시작되는 날

10. 보험가입금액

보험금,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

※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의 나이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출하지 않고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선택하는 보험에서는 보험료 수준에 따라 보험금, 준비금(적립액) 등이 결정됨

11. 책임준비금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보험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

12. 해지환급금

보험계약의 효력상실 또는 해지 시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

01. 무배당 ELS의 정석 변액보험 목차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17
제1조【목적】.....	17
제2조【용어의 정의】.....	17
제2관 보험금의 지급.....	20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20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20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21
제6조【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21
제7조【보험금의 청구】.....	21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	21
제9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22
제10조【주소변경 통지】.....	22
제11조【보험수익자의 지정】.....	22
제12조【대표자의 지정】.....	23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23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	23
제14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23
제15조【사기에 의한 계약】.....	24
제4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24
제16조【보험계약의 성립】.....	24
제17조【청약의 철회】.....	25
제18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26
제19조【계약의 무효】.....	26
제20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27

제21조【보험나이 등】	28
제22조【계약의 소멸】	28

제5관 보험료의 납입..... 28

제23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28
제24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29
제25조【납입된 보험료의 처리】.....	29
제26조【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31
제2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등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31
제28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 등의 부활(효력회복)】	31
제29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32

제6관 특별계정에 관한 사항..... 33

제30조【계약자적립금의 계산】.....	33
제31조【펀드의 운용 및 평가】.....	33
제32조【펀드의 유형】	34
제33조【계약자의 펀드 투입비율 선택 및 변경】.....	35
제34조【‘목표수익률 채권형 펀드 자동변경’에 관한 사항】.....	36
제35조【계약자의 계약자적립금 이전】	36
제36조【‘일반계정전환’에 관한 사항】.....	36
제37조【‘목표수익률 일반계정자동전환’에 관한 사항】.....	37
제38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37
제39조【자산의 평가방법 및 운용】.....	38
제40조【특별계정 좌수 및 기준가격】.....	38
제41조【특별계정의 제비용 및 보수에 관한 사항】.....	38
제42조【계약자 공지에 관한 사항】.....	39
제43조【특별계정의 폐지】	40

제7관 계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40

제44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40
제45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41

제46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41
제47조[해지환급금].....	41
제48조[계약자적립금의 인출].....	41
제49조[보험계약대출].....	42
제50조[배당금의 지급].....	42

제8관 분쟁의 조정 등 43

제51조[분쟁의 조정].....	43
제52조[관할법원].....	43
제53조[소멸시효].....	43
제54조[약관의 해석].....	43
제55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43
제56조[보험계약의 변동사항 통지].....	43
제57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43
제58조[개인정보보호].....	44
제59조[준거법].....	44
제60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44

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45
별표 2 재해분류표.....	46
별표 3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47

상황별 목차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필요한 정보를 해당 약관 조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약관조항
계약 전 알아둘 사항	Q. 계약 전 알려야 하는 사항이 있나요? A.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14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계약을 체결할 때	Q. 보험계약에서 쓰이는 용어를 알고 싶어요. A. 제2조【용어의 정의】 Q. 보험계약의 성립에 관하여 자세히 알고 싶어요. A. 제16조【보험계약의 성립】 제23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Q. 보험계약이 성립될 때 챙겨야 할 것들은 무엇이 있나요? A. 제18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Q. 청약을 철회하고 싶어요. A. 제17조【청약의 철회】
보험금 지급	Q. 보험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A.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Q. 보험금 청구에 관하여 알고 싶어요. A. 제7조【보험금의 청구】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
계약자적립금의 인출	Q. 계약자적립금의 인출에 관하여 알고 싶어요. A. 제48조【계약자적립금의 인출】
해지 및 계약의 효력	Q. 계약의 효력은 어떤 경우에 사라지나요? A. 제22조【계약의 소멸】 Q. 보험을 해지하고 싶어요. A. 제44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제47조【해지환급금】 Q. 보험금 청구를 깜빡 잊고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제53조【소멸시효】
보험의 분쟁 발생시	제51조【분쟁의 조정】
예금보험에 관한 사항	제60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01. 무배당 ELS의 정석 변액보험 약관

제 1 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목적】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피보험자의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라. 진단계약: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마.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가. 재해: '별표 2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를 말합니다.

나. 중요한 사항: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3.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가.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연단위 복리 예시】

원금 100원, 연간 10% 이자율 적용시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2년시점의 총 이자금액

· 1년차 이자 = $\frac{100\text{원}}{\text{원금}} \times 10\% = 10\text{원}$

· 2년차 이자 = $\frac{(100\text{원} + 10\text{원})}{\text{원금} \text{ 1년차 이자}} \times 10\% = 11\text{원}$

⇒ 2년 시점의 총 이자금액 = 10원 + 11원 = 21원

나. 적용이율: 회사가 보험상품 설계시 위험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이율입니다. 일반적으로 적용이율이 높으면 위험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싸게되며, 반대의 경우 비싸게 됩니다.

다. 평균공시이율: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의 계약체결시점의 이율을 말합니다. 평균공시이율은 회사의 홈페이지(www.hanalife.co.kr) 상품공시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 해지환급금: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2005.6.30.>
6. 석가탄신일(음력 4월 8일)
7. 5월 5일(어린이날)
8. 6월 6일(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기독탄신일)
- 10의 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 ① 제2조 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 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 첫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 ② 제2조 제7호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 제7호에 따른 공휴일의 다음 첫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 다. 연계약해당일: 계약일부터 1년 단위로 돌아오는 매년의 계약해당일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년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 라. 월계약해당일: 계약일부터 1개월 단위로 돌아오는 매월의 계약해당일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월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예시】

보험계약일이 2020년 4월 1일인 계약의 경우
 연계약해당일: 2021년 4월 1일, 2022년 4월 1일, 2023년 4월 1일, ……
 월계약해당일: 2020년 5월 1일, 2020년 6월 1일, 2020년 7월 1일, ……

5. 상품 관련 용어

- 가. 변액보험: 회사에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로 자금을 조성하여 특별계정으로 운영하고, 그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계약자에게 투자이익을 배분함으로써 보험기간 중에 해지환급금 등이 변동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 나. 일반계정: 특별계정 이외에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회계처리하기 위한 계정으로 회사는 '다'의 특별계정과 구분하여 재산을 관리하고 회계처리 합니다.

【일반계정】

- 특별계정 외에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회계처리하기 위한 계정을 말합니다.
- 생명보험상품 대부분을 차지하는 관리계정으로 퇴직보험, 연금저축, 변액보험처럼 관련법령으로 특별계정을 설치하여 운용하도록 한 상품을 제외한 것입니다.

- 다. 특별계정: 보험상품의 도입목적, 상품운용방법 등이 일반상품과 상이하여 준비비에 상당하는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재산과 구별하여 관리 및 운용하기 위한 계정을 말합니다.

【특별계정】

- 계약자적립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타 재산과 구별하여 운용하기 위한 계정을 말합니다.
- 보험상품의 도입목적, 상품운용방법 등이 일반상품과 크게 상이하여 보험회사로 하여금 다른 보험상품과 구분하여 별도로 관리 및 운용을 할 것을 보험관련 법규에서 지정한 것으로 계정 상호간 계약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정한 것입니다. 주요 특별계정 상품으로는 퇴직보험, 연금저축, 변액보험 등이 있습니다.

- 라. 펀드: 투자목적 및 대상에 따라 구분된 특별계정 자산을 말합니다.
- 마. 일반계정으로 전환: 제36조('일반계정전환'에 관한 사항) 및 제37조('목표수익률 일반계정자동전환'에 관한 사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자가 신청한 경우 계약자적립금을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전환하여 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 바. 계약자적립금: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개별 계약자 별로 배분된 금액 등을 말하며 특별계정의 평가 등에 의하여 매일 변동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계정으로 전환된 후의 계약자적립금은 이 계약의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일반계정에서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설명】

변액보험은 각 펀드별로 매일의 펀드 운용결과를 반영하여 매일의 기준가격이 변동하기 때문에, 펀드에 투입되는 금액이 동일한 경우라도 그 처리기준일의 기준가격에 따라 매입 좌수에 달라

지므로 향후 수익률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보험약관에서 보장하는 위험에 대하여 보험료, 책임준비금 등이 적정하게 계산될 수 있도록 계산 방법을 기재한 서류입니다.

사. 기본보험료

- 적립형: 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보험계약을 변경할 때 보험료 납입기간 중 매월 납입하기로 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 거치형: 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납입하기로 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아. 추가납입보험료

- 적립형: 보험기간 중 기본보험료 납입주기와 달리 수시로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를 말하며, 납입기간 중에는 해당월의 기본보험료가 납입된 경우에 한하여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습니다. 1회 납입 가능한 추가납입보험료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1회 납입 가능한 추가납입보험료 납입한도】

= 해당월까지 납입한 기본보험료 총액(선납포함)의 200% -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 + 계약자적립금의 인출금액의 합계

(※) 계약자적립금의 인출금액은 기본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금 인출금액과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금의 인출금액을 포함합니다.

- 거치형: 보험기간 중 수시로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추가납입보험료 총납입한도】

= 기본보험료의 200% + 계약자적립금의 인출금액의 합계

(※) 계약자적립금의 인출금액은 기본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금 인출금액과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금의 인출금액을 포함합니다.

- 기본보험료를 감액한 후, 상기에 따라 한도를 계산할 경우 감액후 기본보험료와 기본보험료 감액비율과 동일비율로 감액된 추가납입보험료 및 계약자적립금의 인출금액을 적용합니다.
- 일반계정으로 전환한 이후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할 수 없습니다.

자. 월대체공제액: 보험기간 동안 매월 계약해당일에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하여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에서 차감하는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1) 적립형

- 보험료 납입기간 이내 : 해당월의 보험금 등을 보장하기 위한 위험보험료 및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의 합계액
- 보험료 납입기간 이후 : 해당월의 보험금 등을 보장하기 위한 위험보험료,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 및 계약관리비용(납입완료 후)의 합계액

(2) 거치형

- 해당월의 보험금 등을 보장하기 위한 위험보험료,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계약유지비용)의 합계액

차. 이미 납입한 보험료: 계약자가 회사에 납입한 기본보험료, 추가납입보험료, 제2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등 납입최고(독촉)과 계약의 해지) 및 제28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 등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라 월대체공제액 이상의 금액을 납입하는 경우 해당 금액의 합계를 말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기본보험료를 감액하거나 계약자적립금을 인출한 경우 '차'목 및 제34조('목표수익률 채권형 펀드 자동변경'에 관한 사항), 제36조('일반계정전환'에 관한 사항) 및 제37조('목표수익률 일반계정자동전환'에 관한 사항)에서 정하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제20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4항 및 제48조(계약자적립금의 인출) 제3항에 따라 계산된 보험료와 해당 '감액' 또는 '계약자적립금 인출' 이후 납입된 보험료의 합계를 말합니다.

카. 최저사망보험금: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특별계정의 운용실적과 관계없이 보장하는 최저한도의 사망보험금으로서 사망시점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다만, 일반계정으로 전환한 계약에 대하여 회사는 최저사망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타.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 특별계정의 운용실적과 관계없이 최저사망보험금의 지급을 보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 파. 특별계정운용보수: ‘특별계정운영보수’, ‘특별계정투자일임보수’, ‘특별계정수탁보수’ 및 ‘특별계정사무관리보수’를 합한 보수를 말합니다.
- 특별계정운영보수: 특별계정에 속한 재산의 자산운용 및 관리 등을 위해 회사가 수취하는 보수를 말합니다.
 - 특별계정투자일임보수: 특별계정에 속한 재산의 투자일임을 위해 자산운용사 등 투자일임업자에게 지급하는 보수를 말합니다.
 - 특별계정수탁보수: 특별계정에 속한 재산의 보관 및 관리, 자산운용 지시의 이행, 운용업무의 위규 여부 등을 감시하기 위하여 신탁업자에게 지급하는 보수를 말합니다.
 - 특별계정사무관리보수: 특별계정에 속한 재산의 회계업무 및 기준가격 산정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일반사무관리회사에게 지급하는 보수를 말합니다.

제 2 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사망보험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이때 사망보험금은 제2조(용어의 정의) 제5호 카목의 ‘최저사망보험금’을 최저한도로 합니다.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2조(계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종선고】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 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고 신분이나 재산에 관한 모든 법적 관계를 확정시키는 법원의 결정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 ①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 ②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 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 ②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그 이행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또는 제22조(계약의 소멸) ‘사망’의 원인 및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사망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 ①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의원

- 나. 치과의원
 - 다. 한의원
 -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병원
 - 나. 치과병원
 - 다. 한방병원
 - 라. 요양병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의료재활 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마. 종합병원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심신상실】

의식은 있으나 심신장애의 정도가 심해 자신의 행위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능력을 갖지 못한 상태

- 나.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제6조【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설명】

“지체없이”라 함은 “의무 이행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지연하는 일이 없이”라는 의미입니다.

제7조【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

- ① 회사는 제7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별표3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과 같이 계산합니다.
-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7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신청

【설명】

분쟁조정신청은 제51조(분쟁의 조정)에 따르며 분쟁조정신청 대상기관은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말합니다.

3. 수사기관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5. 제5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 조사와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6.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3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제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보험금 가지급제도】

지급기한 내에 보험금이 지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예상되는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 이는 피보험자가 당장 필요로 하는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해 회사가 먼저 지급해주는 임시 급부금임

- ④ 제3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14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와 제1항 및 제3항의 보험금 지급사유 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 조사 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⑥ 회사는 제5항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시 조사목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명합니다.

제9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른 사망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거나 일시에 지급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일시에 지급할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지급할 금액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며, 나누어 지급할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10조【주소변경 통지】

- ①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② 제1항에서 정한 대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변경내용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11조【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계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으로 합니다.

【법정상속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민법」의 규정에 의한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받는 자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제12조【대표자의 지정】

-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를 1명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1명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 ③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계약전 알릴 의무, 보험료 납입의무 등 보험계약에 따른 계약자의 의무를 연대로 합니다.

【연대】

2인 이상이 함께 책임을 지므로 각자 채무의 전부를 이행할 책임을 지되(지분만큼 분할하여 책임을 지는 것과 다름), 다만 어느 1인의 이행으로 나머지 사람들도 책임을 면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제 3 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 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에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계약전 알릴 의무】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청약시에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위반시 보험계약의 해지 또는 보험금 부지급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직업, 현재 및 과거 병력, 장애상태, 고위험 취미(예: 암벽등반, 패러글라이딩), 타사 보험계약 가입여부 등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보험계약 체결 및 보험금지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못한다.

제14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 ①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 하

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3.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회사가 이 계약을 청약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따라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사례】

계약을 청약하면서 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이 있다고만 얘기하였을 뿐,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사항에 아무런 기재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 병력을 얘기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경우에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사실 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사유 및 계약의 처리 결과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익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제47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드리며, 보장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④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의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해지 또는 보장을 제한하기 이전까지 발생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⑤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15조【사기에 의한 계약】

-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자에게 실제 납입한 보험료(계약자적립금의 인출 및 감액 등으로 회사가 실제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를 돌려드립니다.

제 4 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6조【보험계약의 성립】

-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금액 제한】

피보험자가 가입을 할 수 있는 최대보험가입금액을 제한하는 방법

【일부보장 제외(부담보)】

일반적인 경우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특정질병 또는 특정 신체 부위를 보장에서 제외하는 방법

【보험금 삭감】

일반적인 경우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보험가입 후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위험의 크기 및 정도가 점차 감소하는 위험에 대해 적용하여 보험 가입 후 일정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미리 정해진 비율로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방법

【보험료 할증】

일반적인 경우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보험가입 후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위험의 크기 및 정도가 점차 증가하는 위험 또는 기간의 경과에 상관없이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위험에 적용하는 방법으로 위험정도에 따라 해당 보험료 이외에 특별보험료를 추가하는 방법

-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계약은 청약일, 진단계약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을 드립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 ④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 + 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⑤ 회사가 제2항에 따라 일부보장 제외 조건을 붙여 승낙하였더라도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보장이 제외되는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 ⑥ 제5항의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제2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등 납입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 ⑦ 제28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 등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을 청약한 날을 제5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제17조【청약의 철회】

- ①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전문보험계약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2조(정의), 「보험업법시행령」 제6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등) 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1-4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에서 정한 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 등의 전문보험계약자를 말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③ 계약자는 청약서의 청약철회란을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거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제1항의 청약 철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④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사업방법서의 보험계약 대출에 관한 사항’ 참조, 이하 ‘보험계약대출이율’이라 합니다)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대출이율의 공시】

보험계약대출이율은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hanalife.co.kr) ‘상품공시실’ 내 ‘적용이율공시’에서 공시합니다.

- ⑤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⑥ 제1항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제18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광기록매체(CD, DVD 등),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또한,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약관 및 그 설명문(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설명한 문서)을 읽거나 내려받게 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 해당 약관을 드리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2.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약관의 중요한 내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42조의 2(설명 의무의 중요사항 등)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4-35조의 2(보험계약 중요사항의 설명의무)에 정한 다음의 내용을 말합니다.

- 청약의 철회에 관한 사항
- 지급한도, 면책사항, 감액지급 사항 등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 위반의 효과
- 계약의 취소 및 무효에 관한 사항
- 해지환급금에 관한 사항
- 분쟁조정절차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약관에 기재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

【통신판매계약】

전화·우편·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정의)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전자서명법」 제2조(정의)】

2. "전자서명"이라 함은 서명자를 확인하고 서명자가 당해 전자문서에 서명을 하였음을 나타내는 데 이용하기 위하여 당해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3. "공인전자서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추고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전자서명을 말한다.
 - 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할 것
 - 나. 서명 당시 가입자가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지배·관리하고 있을 것
 - 다. 전자서명이 있는 후에 당해 전자서명에 대한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 라. 전자서명이 있는 후에 당해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때에는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위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드림으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의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일 경우
- ④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자에게 실제 납입한 보험료(계약자적립금의 인출 및 감액 등으로 회사가 실제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19조【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실제 납입한 보험료(계약자적립금의 인출 및 감액 등으로 회사가 실제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
2.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심신상실자 및 심신박약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라 함은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자를 말합니다.

3.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제2호의 만 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20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기본보험료의 감액
2. 계약자
3. 기타 계약의 내용

- ②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변경된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권리를 대항하기 위해서는 계약자가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설명】

계약자가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회사에 알리지 않았다면 회사는 변경된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니,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때에는 회사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변경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변경된 보험수익자에게는 별도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본보험료를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추가납입보험료도 같은 비율로 감액되며,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아, 이로 인해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47조(해지환급금) 제2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기본보험료를 감액할 때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최초 가입할 때 안내한 해지환급금 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기본보험료의 감액】

기본보험료를 계약시 선택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줄이는 것으로 이에 따라 적립액(해지환급금) 및 보장금액도 줄어듭니다.

- ④ 제3항에 따라 기본보험료를 감액한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감액 직후 「이미 납입한 보험료」】

$$= \text{감액 직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 \times \frac{\text{감액 직후 계약자적립금}}{\text{감액 직전 계약자적립금}}$$

(※) 감액 직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해당 감액 전에 계약자적립금의 인출 및 감액이 발생한 경우 제48조(계약자적립금의 인출) 제3항 및 상기 방법에 따라 계산된 이미 납입된 보험료를 말합니다.

- ⑤ 계약자가 제2항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하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하여야 합니다.
- ⑥ 회사는 제1항 제3호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교부하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제21조【보험나이 등】

- ①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19조(계약의 무효) 제2호의 경우에는 실제 만 나이를 적용합니다.
- ②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연계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해당년도에 연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 해당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③ 청약서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사항이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에 기재된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신분증을 기준으로 정정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합니다.
- ④ 제3항에 따라 피보험자의 나이 또는 성별이 변경된 경우, 변경 시점 이후 잔여보험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원인 해지환급금 정산으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여야 할(또는 반환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험나이 계산 예시】

생년월일: 1994년 10월 2일, 현재(계약일): 2020년 4월 13일
⇒ 2020년 4월 13일 - 1994년 10월 2일 = 25년 6월 11일 = 26세

제22조【계약의 소멸】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 5 관 보험료의 납입

제23조【제 1 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②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보장개시일】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 ③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1.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나 진단계약의 경우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2. 제14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설명】

“제14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한다는 뜻은 “제14조(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표준으로 삼아 적용”한다는 뜻입니다.

3.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다만, 진단계약에서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재해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해드립니다.
- ④ 청약서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별로 보험가입금액의 한도액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청약을 하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초과 청약액에 대하여는 보장을 하지 않고, 초과 청약액에 대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제24조[제 2 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 ① 적립형의 경우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기본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고,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 포함)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납입기일】

적립형계약의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기본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기본보험료를 선납할 경우에는 당월분을 포함하여 12개월분 이하의 기본보험료를 선납할 수 있으며, 기본보험료의 배수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③ 제2항의 선납보험료는 제25조(납입된 보험료의 처리)에 따라 이 계약의 적용이율로 적립하여 해당 월 계약해당일에 당월 특별계정 투입보험료 해당액(기본보험료에서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며, 적용이율로 계산한 이자포함)을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이체합니다.

제25조[납입된 보험료의 처리]

- ①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된 특별계정 투입보험료에 해당하는 이체금액을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이체합니다.

【특별계정 투입보험료】

적립형의 경우, 납입보험료에서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거치형의 경우, 계약체결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에서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 및 ‘이체금액’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1회 보험료

구분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	이체금액
청약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된 경우	청약일부터 3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특별계정 투입보험료를 제1회 보험료 납입일부터 「청약일부터 3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까지는 적용이율로 부리하여 적립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펀드의 투자수익률로 부리하여 적립한 금액
청약일부터 30일이 지난 후 승낙된 경우	승낙일	

2. 제2회 이후의 기본보험료(적립형에 한함)

구분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	이체금액
「월계약해당일 - 제2영업일」 이전에 납입한 경우	「월계약해당일」	기본보험료를 납입일부터 월계약해당일까지 적용이율로 부리하여 적립한 금액에서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한 금액
「월계약해당일 - 제1영업일」에 납입한 경우	「납입일 + 제2영업일」	기본보험료를 월계약해당일까지 적용이율로 부리하여 적립한 후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하고 월계약해당일부터 「납입일 + 제2영업일」까지 적용이율로 부리하여 적립한 금액
「월계약해당일」 이후에 납입한 경우	「납입일 + 제2영업일」	기본보험료에서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한 후 납입일부터 「납입일 + 제2영업일」까지 적용이율로 부리하여 적립한 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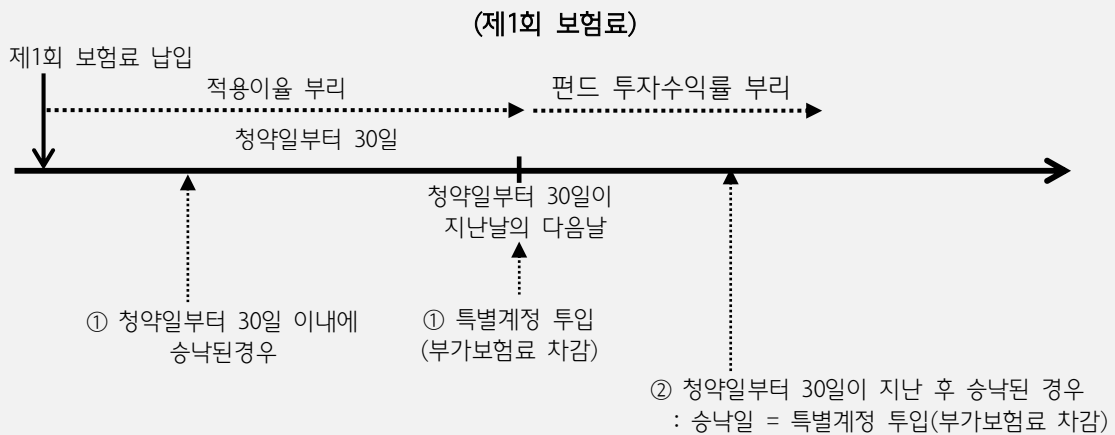
3. 추가납입보험료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	이체금액
「납입일 + 제2영업일」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일부터 「납입일 + 제2영업일」까지 적용이율로 부리하여 적립한 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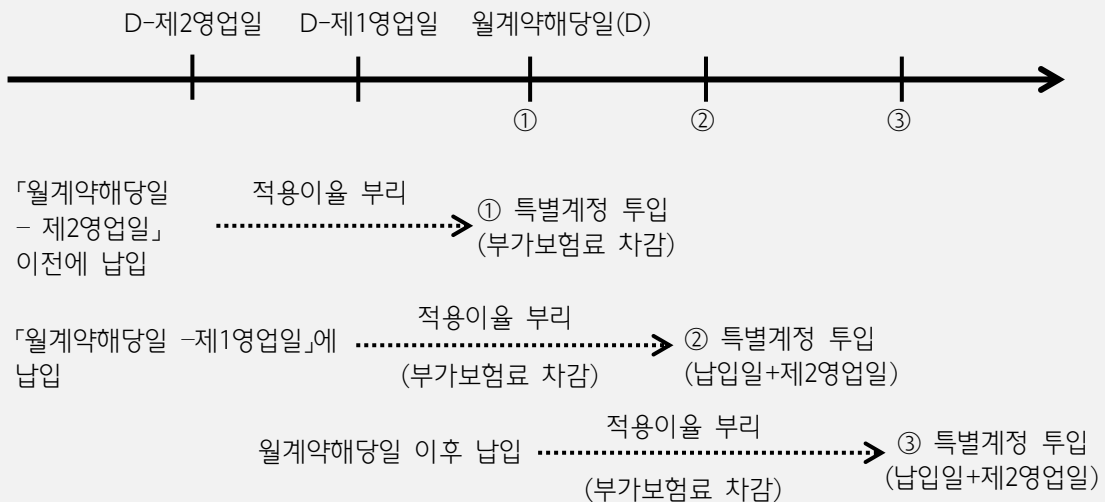
다만, 추가납입보험료의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이 제1회 보험료보다 먼저 발생한 경우, 제1회 보험료의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을 추가납입보험료의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로 합니다. 이 경우 이체금액은 납입일부터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적용이율로 부리하여 적용한 금액으로 합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제16조(보험계약의 성립) 제4항을 적용하며, 계약자가 그 청약을 철회한 경우에는 제17조(청약의 철회) 제4항의 내용을 적용합니다.

【납입된 보험료의 특별계정 투입 예시】



(제2회 이후의 기본보험료)



(추가납입보험료)



제26조【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 ① 적립형의 경우 계약자는 제2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등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른 기본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기본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9조(보험계약대출)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으로 기본보험료가 자동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서면 이외에 인터넷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경우 회사는 자동대출납입 신청내역을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더한 금액이 해지환급금(해당 기본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을 초과하는 때에는 기본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더는 할 수 없습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본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기간은 최초 자동대출납입일부터 1년을 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기본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을 위해서는 제1항에 따라 재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④ 기본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이 행하여진 경우에도 자동대출 납입 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해지를 청구한 때에는 회사는 기본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제47조(해지환급금) 제2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 ⑤ 회사는 자동대출납입이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동대출납입이 종료되었음을 서면,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SMS 포함) 등으로 계약자에게 안내하여 드립니다.

제2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등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기본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기본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에서 월대체공제액을 차감할 수 없는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1.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 가. 제2회 이후의 기본보험료가 납입기일까지 납입되지 않은 경우 : 연체된 기본보험료
 - 나.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에서 월대체공제액을 차감할 수 없는 경우 : 이 계약의 유지에 필요한 보험료(차감되지 않은 월대체공제액 이상의 금액)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제1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전자서명법」 제2조(정의)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공인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드립니다.
-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47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납입최고(독촉)】

약정된 기일까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우, 회사가 계약자에게 납입을 재촉하는 일

제28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 등의 부활(효력회복)】

- ① 계약자의 기본보험료 납입 연체 등의 사유로 해지된 계약에 대한 특별계정의 계약자적립금상당액은 계약이 해지된 날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일반계정으로 이체하여 관리합니다.
- ② 제2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등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다음의 금액에 평균공시이율+1%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1. 제2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등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해지된 경우 부활

- (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기본보험료
2.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에서 월대체공제액을 차감할 수 없어 계약이 해지된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차감되지 않은 월대체공제액 이상의 금액
(다만, 해당금액은 추가납입보험료 한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③ 제2항의 금액을 납입하더라도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부활(효력회복)이 가능하지 않거나 부활(효력회복) 후 바로 효력을 잃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위해서 추가적인 금액의 납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④ 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승낙한 계약의 경우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부활(효력회복)로 인하여 이체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복리(연미만단리)로 부리한 계약자적립금과 연체보험료(제2항에서 정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연체보험료'라고 합니다) 중 특별계정 투입보험료 해당액(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및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 제외, 평균공시이율로 계산한 이자 포함) 등을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 당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이체하여 계약자적립금으로 합니다.
- ⑤ 제4항에 의하여 계약자적립금을 이체하는 경우 및 부활(효력회복) 이후 계속보험료의 펀드투입비율은 제32조(펀드의 유형)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펀드내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⑥ 제4항에서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
부활(효력회복) 승낙 후 연체보험료(연체이자 포함)의 납입이 완료된 경우	「연체보험료 납입완료일 + 제2영업일」
연체보험료(연체이자 포함)의 납입을 완료한 후 제2영업일 이내에 부활(효력회복) 승낙이 이루어진 경우	「연체보험료 납입완료일 + 제2영업일」
연체보험료(연체이자 포함)의 납입을 완료한 후 제2영업일 이 지난 후에 부활(효력회복) 승낙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효력회복) 승낙일

- ⑦ 제2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14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제15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16조(보험계약의 성립) 제2항과 제3항 및 제23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 ⑧ 제2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 계약을 청약한 때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14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부활(효력회복)】

보험료 납입을 연체하여 계약이 해지되고 계약자가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에 회사가 정하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해지된 계약을 다시 되살리는 일

제29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 ①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고 제20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강제집행】

국가의 집행기관이 채권자를 위하여 사법상의 청구권을 국가권력을 가지고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법적 절차

【담보권실행】

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않을 경우, 채무이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공된 담보로부터 담보권자가 채무를 변제 받는 절차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

납세자가 국세 및 지방세를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행하는 압류 및 공매 처분 등 절차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합니다.
-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에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 ④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 ⑤ 보험수익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3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통지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제 6 관 특별계정에 관한 사항

제30조[계약자적립금의 계산]

- ① 이 계약의 계약자적립금은 이전 계약자적립금과 계약자적립금의 인출액 및 특별계정 투입보험료에서 월계약해당일에 월대체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매일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을 반영하여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합니다.

【특별계정 투입보험료】

납입보험료에서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 ② 회사는 특별계정에서 운용되는 계약자적립금에서 특별계정운용보수를 차감합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일반계정으로 전환된 후의 계약자적립금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합니다.

제31조[펀드의 운용 및 평가]

- ① 변액보험의 펀드는 특별계정 별로 일반보험의 자산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운용되며, 자산운용실적이 계약자적립금에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매일 평가합니다.
- ② 제1항의 특별계정에서 관리되는 자산의 운용실적에 의한 이익 및 손실은 다른 계정의 자산운용에 따른 이익 및 손실에 관계없이 이 계약으로 귀속됩니다.
- ③ 계약자는 특별계정의 자산운용방법에 대해서는 일체의 관여를 할 수 없습니다.
- ④ 회사는 이 계약의 운용자산을 회사가 운영하는 다른 변액보험의 유사한 성격의 운용자산별로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펀드 통합사유, 통합일자, 기타 펀드통합 관련사항을 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등록)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으로서 동법 제2조(정의) 제1호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 같습니다)에 공고하거나 계약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또한 회사는 펀드를 통합한 날 이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각 펀드의 결산서류를 회사 본점에 비치합니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등록)

- ① 신문을 발행하거나 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전자적으로 발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 또는 관리하거나 법인이나 그 밖의 단체 또는 기관이 그 소속원에게 보급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주된 보급대상 및 보급지역(신문에 한정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신문"이란 정치·경제·사회·문화·산업·과학·종교·교육·체육 등 전체 분야 또는 특정 분야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같은 명칭으로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간행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가. 일반일간신문: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일 발행하는 간행물
 - 나. 특수일간신문: 산업·과학·종교·교육 또는 체육 등 특정 분야(정치를 제외한다)에 국한된 사항의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일 발행하는 간행물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제32조【펀드의 유형】

① 펀드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가지수ELS 적립형/거치형(이하 ‘ELS형’ 펀드라 합니다): 개별 호수(예: 적립형 제1호, 거치형 제1호, 적립형 제2호, 거치형 제2호, ...)로 구분하여 별도로 운영되며, 개별 호수별로 파생결합증권 [KOSPI200, S&P500, HSI, HSCEI, DAX, FTSE100, NIKKEI225, EUROSTOXX50 등 주가지수에 주로 연계된 파생결합증권]에 순자산(NAV)의 50% 이상 100% 이내로 투자하고, 채권 및 채권형 펀드에의 투자는 50% 이하로 하며,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자산에 투자합니다. 파생결합증권의 수익금은 주로 채권 또는 채권형 펀드(원화 또는 기타통화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채권 또는 채권형 펀드)에 투자하며 이 경우 파생결합증권의 수익이 장기간 누적된 경우 파생결합증권의 투자비율은 50%이상이 되고 수익금의 대부분을 투자한 채권형 펀드의 투자비율은 50%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장하락으로 인한 펀드의 수익을 저하가 예상되는 경우 해당 파생결합증권의 위험을 헷지하는 파생결합증권 및 파생상품에 투자가 가능하며 이 경우 파생결합증권의 순투자비율은 일시적 또는 장기적으로 50% 이하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다만, 주가지수ELS적립형/거치형 펀드 각 호수별 설정일 또는 투자한 파생결합증권 상환일로부터 1개월 이내인 경우이거나, 투자금액 및 시장상황 등에 따라 파생결합증권에 효율적 투자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에는 단기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MMF포함), 채권 등에 순자산(NAV)의 50%이상 100% 이내로 투자하며, 나머지는 유동성자산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2. 국내주식형: 운용보수가 저렴한 국내 주식형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하여 KOSPI200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입니다. 60~100% 이내로 국내 상장지수펀드에 투자하여 KOSPI200 지수의 수익률을 효율적으로 추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 글로벌채권형: 글로벌자산운용사가 운영하는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전세계 다양한 채권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펀드입니다. 60~100% 이내로 전세계 채권섹터에 분산투자를 하여 장기적으로 국내 기준금리 이상의 수익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4. MMF형: 이 펀드는 채권과 양도성 예금증서(CD), 기업어음(CP), Call-loan 등 유동자산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② 제1항의 ELS형 펀드는 투자 시 정해진 조건에 따라 기초자산인 KOSPI200, S&P500, HSI, HSCEI, DAX, FTSE100, NIKKEI225, EUROSTOXX50 등의 지수를 매 주기 상환평가일 마다 관찰하여 주기상환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당해 펀드로 조기상환 되며, 그러하지 못할 경우 파생결합증권의 만기 시 상환됩니다. 이때, 만기 시 기초자산 관찰결과가 투자 시 정해진 일정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ELS형 펀드가 투자한 파생결합증권이 조기상환 또는 만기상환 되는 경우, 당해 펀드는 일반적으로 1개월 이내에 다른 파생결합증권에 다시 투자하며, 이 경우 새로이 투자된 파생결합증권의 상환조건 및 수익률 등의 투자조건은 이미 상환된 파생결합증권의 투자조건과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된 파생결합증권이 상환된 이후 재투자가 실행되기 전에 투자할 것으로 예상되는 파생결합증권을 계약자에게 사전에 안내하고 계약자가 파생결합증권에 재투자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경우 ‘ELS형 펀드’ 이외 펀드로 계약자적립금의 이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적립형의 경우 상환되지 않은 파생결합증권이 있는 경우 ‘ELS형 펀드’ 이외 펀드로 계약자적립금의 이전으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파생결합증권에서 정한 조기(만기)상환 예시】

계약자가 가입한 ELS형 펀드가 아래와 같은 파생결합증권(ELS)에 투자할 것을 가정한 경우,

- 유형: 3년만기, 월지급식 스텝 다운 조기상환형 No Knock-in
- 기초자산: KOSPI200, S&P500, HSCEI
- 수익률: 연 6.00%(매월 쿠폰지급평가기준 최초기준가격의 60%이상)
- 차수별 상환조건(상환평가일에 최초기준가격 대비 세 기초자산의 증가가 모두 상환조건을 충족할 경우)

구분	평가차수	상환조건
조기 상환	1차(6개월)	90% 이상
	2차(12개월)	90% 이상
	3차(18개월)	85% 이상
	4차(24개월)	80% 이상
	5차(30개월)	75% 이상
만기상환	6차(36개월)	60% 이상

* No Knock-in은 Knock-in이 없는 것을 말하며, Knock-in은 기초자산 가격이 일정수준에 도

달하면 새로운 수익구조가 생기는 것으로 원금손실이 발생하는 구간을 말합니다.
 ** 상환평가일은 파생결합증권 발행인이 차수별 상환조건 충족여부를 평가하기로 규정한 날
 입니다.

· 조기상환 예시(2차시)

구분	KOSPI200	S&P500	HSCEI	상환여부
최초기준가격	1,000	2,000	3,000	-
1차(6개월)	800	1,900	2,700	미상환
2차(12개월)	900(90%)	1,950(97.5%)	2,900(96.7%)	상환

* 1차 상환평가시 KOSPI200의 총가가 상환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파생결합증권이 미상환 됨
 2차 상환평가시 세 기초자산의 총가가 모두 상환조건을 충족하므로 파생결합증권이 조기상환 됨

· 만기 손실발생 예시

구분	KOSPI200	S&P500	HSCEI	상환여부
최초기준가격	1,000	2,000	3,000	-
1차(6개월)	800	1,900	2,700	미상환
2차(12개월)	900	1,600	2,900	미상환
3차~5차	...	...	...	미상환
6차(만기)	600(60%)	800(40%)	2,100(70%)	원금손실

* 만기(6차) 상환평가시 S&P500의 총가가 최초기준가격의 40%(최초기준가격의 60% 미만)로 파
 생결합증권 투자원금손실 발생
 파생결합증권 투자원금 손실률은 세 기초자산 중 하락률이 가장 큰 기초자산(S&P500)의 하락률
 을 적용한 60%임.

- ③ 회사는 ELS형 펀드 각 호수 별로 투자한 파생결합증권의 유형, 상환조건 및 수익률 등의 주요내용을 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계약자에게 안내합니다.
- ④ 제1항에서 회사가 운용재산인 유가 증권 등의 가격변동 및 해지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항의 규정
 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 또는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⑤ 회사는 제1항의 ELS형 펀드에 투자한 계약자 중 일부 계약자의 파생결합증권 조기(만기)상환 전 중도
 환매로 인한 손익이 잔여 계약자에게 귀속되지 않도록 합니다.
- ⑥ 제1항의 투자대상은 보험업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서 운용되고
 그 관계법령이 제·개정될 경우 대체 또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⑦ 제1항에서 정한 펀드의 유형 이외에 새로운 펀드가 추가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가 정한 범위 내
 에서 이미 가입한 계약자도 신규펀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33조【계약자의 펀드 투입비율 선택 및 변경】

- ① 계약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제32조(펀드의 유형)에서 정한 펀드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 가능한 펀드의 갯수는 최대 4개이며, 펀드별 투입비율은 5% 단위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년 12회 범위 내에서 펀드별 투입비율의 변경을 회사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ELS펀드의 펀드
 투입비율 변경은 투입비율을 감소시키는 변경만 가능합니다.
- ② 계약자는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 제1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펀드별 투입비율을 별도로
 선택할 수 있으며 별도의 설정이 없는 경우는 기본보험료의 펀드별 투입비율에 따릅니다. 다만, 추가납
 입보험료의 펀드별 투입비율을 정할 때 ELS형 펀드는 선택 할 수 없습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거치형의 경우 ELS형 펀드의 파생결합증권이 조기(만기) 상환된 경우에 한하여 ELS
 형 펀드로 추가납입이 가능합니다.
- ④ 특별계정 투입보험료에 해당하는 이체금액은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설정한 펀드별 투입비율에 따라 분
 산 투입됩니다.
- ⑤ 펀드 투입비율 변경시 수수료는 없습니다.

제34조【‘목표수익률 채권형 펀드 자동변경’에 관한 사항】

- ① 계약자는 보험기간 중 ‘목표수익률 채권형 펀드 자동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계약에 한하여 계약자적립금 전액을 제32조(펀드의 유형)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글로벌채권형 펀드(다만, 폐지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장 유사한 펀드)로 자동 변경하여 드립니다.
 1. 계약일 이후 3년이상 경과된 계약
 2. 계약자가 선택한 목표수익률에 도달한 계약
- ② 계약자는 120%, 130%, 140% 중 하나의 목표수익률을 선택해야 하며, 보험기간 중 변경할 수 있습니다. 목표수익률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text{목표수익률(\%)} = \frac{\text{계약자적립금}}{\text{「이미 납입한 보험료」}} \times 100$$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동변경되는 계약은 「목표수익률 달성일 + 제2영업일」에 당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글로벌채권형 펀드로 변경하여 운용하며, 자동변경된 이후에 납입되는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는 글로벌채권형 펀드로 전액 투입됩니다.
- ④ 글로벌채권형 펀드로 자동변경 된 이후 계약자는 제33조(계약자의 펀드 투입비율 선택 및 변경) 및 제35조(계약자의 계약자적립금 이전)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펀드 투입비율 변경 및 계약자적립금 이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⑤ 회사는 ‘목표수익률 채권형 펀드 자동변경’을 연간 펀드 변경 횟수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 ⑥ 계약자는 보험기간 중 선택한 목표수익률 도달전에는 목표수익률의 변경, 신청취소 및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사는 신청을 받은 날의 다음 영업일부터 이를 적용합니다.
- ⑦ 목표수익률 채권형 펀드 자동변경을 선택한 경우, 제37조(‘목표수익률 일반계정자동전환’에 관한 사항)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 ⑧ 회사는 목표수익률 채권형 펀드 자동변경을 신청한 계약자에게 변경과 관련된 사항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제35조【계약자의 계약자적립금 이전】

- ① 계약자는 계약일 이후 매년 12회 범위에서 계약자적립금의 일부 및 전부에 대하여 다른 펀드로의 이전을 회사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ELS형 펀드로의 계약자적립금의 이전은 제한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치형의 경우 ELS형 펀드의 파생결합증권이 조기(만기) 상환된 경우에 한하여 ELS형 펀드로 계약자적립금의 이전은 가능합니다.
-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자적립금 이전을 요청 받은 경우에는 제43조(특별계정의 폐지)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변경요구일 + 제2영업일」에 당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현금을 이전하는 방식에 따릅니다.
- ④ 회사는 천재·지변, 유가증권 시장의 폐쇄·휴장, 유가증권 등의 매각지연, 기타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3항에서 정하는 날까지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 및 향후 이전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보험재산이 처분되는 날부터 제2영업일을 기준으로 현금을 이전하는 방식을 따릅니다.
- ⑤ 계약자적립금 이전시 수수료는 없습니다.

제36조【‘일반계정전환’에 관한 사항】

- ① 계약자는 보험기간 중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 경우 일반계정전환을 회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신청 받은 계약의 계약자적립금 전액을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이체하여 드립니다.
 1.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유효한 계약
 2. 계약일 이후 3년이상 경과된 계약
 3. 전환신청일 기준으로 해지환급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10% 이상인 계약
- ② 제1항에 따라 전환되는 계약은 「전환신청일 + 제2영업일」(이하 ‘전환일’이라 합니다)에 당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전환하여 운용합니다.
- ③ 일반계정으로 전환된 계약자적립금은 전환일부터 제38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의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적립됩니다. 일반계정으로 전환시에는 다시 특별계정으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 ④ 일반계정으로 전환된 계약의 경우, 전환이후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할 수 없습니다.

제37조【‘목표수익률 일반계정자동전환’에 관한 사항】

- ① 계약자는 보험기간 중 ‘목표수익률 일반계정자동전환’을 신청할 수 있으며,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계약에 한하여 계약자적립금 전액을 일반계정으로 자금이체하여 드립니다.
1.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유효한 계약
 2. 계약일 이후 3년이상 경과된 계약
 3. 계약자가 선택한 목표수익률에 도달한 계약
- ② 계약자는 120%, 130%, 140% 중 하나의 목표수익률을 선택해야 하며, 보험기간 중 변경할 수 있습니다. 목표수익률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text{목표수익률(\%)} = \frac{\text{계약자적립금}}{\text{「이미 납입한 보험료」}} \times 100$$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동전환되는 계약은 「목표수익률 달성일 + 제2영업일」(이하 ‘전환일’이라 합니다)에 당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계약자적립금이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전환하여 운용합니다.
- ④ 일반계정으로 전환된 계약자적립금은 전환일부터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적립됩니다. 일반계정으로 전환시에는 다시 특별계정으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 ⑤ 일반계정으로 전환된 계약의 경우, 전환이후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할 수 없습니다.
- ⑥ 계약자는 보험기간 중 선택한 목표수익률 도달 전에는 목표수익률의 변경, 신청취소 및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사는 신청을 받은 날의 다음 영업일부터 이를 적용합니다.
- ⑦ 목표수익률 일반계정자동전환을 선택한 경우, 제34조(‘목표수익률 채권형 펀드 자동변경’에 관한 사항)에 따른 목표수익률 채권형 펀드 자동변경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 ⑧ 회사는 목표수익률 일반계정자동전환을 신청한 계약자에게 전환과 관련된 사항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제38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 ① 일반계정으로 전환된 경우 계약자적립금 계산시 적용하는 적립이율은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로 하며, 매월 1일부터 당월 마지막 날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연복리 1.25%, 5년 초과 10년 이내에는 연복리 1.0%,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복리 0.75%로 합니다.

【최저보증이율】

운용자산이익률 및 시중금리가 하락하더라도 보험회사에서 보증하는 최저한도의 적용이율입니다. 예를 들어, 적립액이 공시이율에 따라 적립되며 공시이율이 0.5%인 경우 적립액은 공시이율(0.5%)이 아닌 최저보증이율(계약일 이후 5년 이내에는 연복리 1.25%, 5년 초과 10년 이내에는 연복리 1.0%, 10년 초과시에는 연복리 0.75%)로 적립됩니다.

- ② 제1항의 공시이율은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내부지표와 외부지표를 가중평균하여 산출된 공시기준이율에서 장래 운용수익률,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한 조정률을 가감하여 결정합니다.

【내부지표】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운용자산수익률에서 투자지출률을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외부지표】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국고채 수익률, 회사채 수익률 및 통화안정증권 수익률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공시이율 및 산출방법 등을 매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공시이율의 공시】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hanalife.co.kr)의 ‘상품공시실’ 내 ‘전체 상품목록’에서 각 상품별로 공시하며, 적용되는 공시이율 및 산출방법 등은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의 ‘상품공시실’ 내 ‘적용이율 공시’에서 공시합니다.

제39조【자산의 평가방법 및 운용】

- ① 특별계정 자산의 평가는 각 특별계정별로 적용됩니다.
- ② 특별계정 자산의 평가 및 운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릅니다.

제40조【특별계정 좌수 및 기준가격】

특별계정 좌수 및 기준가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출합니다.

1. 좌수
특별계정 설정시 1원을 1좌로 하며, 그 이후에는 매일 좌당 기준가격에 따라 좌단위로 특별계정에 이체 또는 인출합니다.
2. 좌당 기준가격
특별계정의 좌당 기준가격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되,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 자리까지 계산하며 최초 판매개시일의 기준가격은 1,000좌당 1,000원으로 합니다.

$$\text{좌당 기준가격} = \frac{\text{당일 특별계정의 순자산가치}}{\text{특별계정의 총 좌수}}$$

다만, 당일 특별계정의 순자산가치라 함은 당일 특별계정의 총자산에서 특별계정운용보수를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3. ELS형 펀드의 기준가격은 개별 호수(예: 적립형 제1호, 거치형 제1호, 적립형 제2호, 거치형 제2호, ...) 별로 각각 별도로 산출합니다.

【예시】

예를 들어,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특별계정 투입보험료가 1,000만원이며, 해당일자의 펀드기준가격이 1,250.00일 경우,
계약자 보유좌수는 $1,000\text{만원} \div 1,250.00 \times 1,000 = 800\text{만}$ (좌수)
이후 특별계정의 자산운용실적이 좋아져서 펀드 기준가격이 1,400.00으로 증가하였다면,
계약자 적립액은 $800\text{만(좌수)} \times 1,400.00 \div 1,000 = 1,120\text{만원}$ 으로 증가합니다.

제41조【특별계정의 제비용 및 보수에 관한 사항】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8조(신탁계약의 체결 등)에 따른 보수, 그 밖의 수수료와 동법 시행령 제265조(회계감사인의 선임 등)에 따른 회계감사비용, 채권평가비용 및 유가증권 매매수수료 등을 특별계정자산에서 인출하여 부담합니다. 다만, 자산운용 보고서를 작성·제공하는데 드는 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8조(신탁 계약의 체결 등)】

- ① 투자신탁을 설정하고자 하는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신탁계약서에 의하여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상호
 2. 신탁원본의 가액 및 제18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발행하는 투자신탁의 수익권(이하 "수익증권"이라 한다)의 총좌수에 관한 사항
 3.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이익분배 및 환매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계산방법과 지급시기·방법에 관한 사항.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기준가격 산정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는 해당 투자신탁재산에서 부담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6. 수익자총회에 관한 사항
 7. 공시 및 보고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수익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제190조제5항 본문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1.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2항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제2항 후단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을 설정하는 경우(그 투자신탁을 추가로 설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신탁업자에게 해당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원본 전액을 금전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5조(회계감사인의 선임 등)】

- ① 법 제240조제4항에 따라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투자회사는 제외한다)이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감사인을 선임하거나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의 감사의 동의(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말한다)를 받아야 하며, 투자회사가 회계감사인을 선임하거나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감독이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②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회계감사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한다.
- ③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회계감사인의 권한은 법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④ 회계감사인은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회계감사를 마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회계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에게 이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1. 집합투자재산의 대차대조표
 2. 집합투자재산의 손익계산서
 3. 집합투자재산의 기준가격계산서
 4. 집합투자업자 및 그 이해관계인(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이해관계인을 말한다)과의 거래내역
- ⑤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회계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협회, 그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및 그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에게 이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 ⑥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투자자가 회계감사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⑦ 회계감사에 따른 비용은 그 회계감사의 대상인 집합투자기구가 부담한다.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제42조【계약자 공지에 관한 사항】

- ① 회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계약자에게 공지합니다.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수시공시의 방법등) 제2항에서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3. 회사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4.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 ② 회사는 변액보험 판매 후 매 3개월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8조(자산운용보고서의 교부)에서 규정한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계약자에게 제공합니다. 다만, 일반계정으로 전환된 이후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8조(자산운용서의 교부)】

- ①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자산·부채 및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 가.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 나. 회계기간의 말일
 - 다.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 라. 해지일 또는 해산일
 2. 직전의 기준일(직전의 기준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최초 설정일 또는 성립일을 말한다)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해당 운용기간"이라 한다)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 사항
 3.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집합투자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4.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회전을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제1항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의 교부시기 및 방법, 비용부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수시공시의 방법등) 제2항】**
- ②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실자산"이란 발행인의 부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금융위원회가 부실자산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자산을 말한다.
-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제43조【특별계정의 폐지】

-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계정을 폐지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각 특별계정의 자산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자산가치의 변화로 효율적인 자산 운용이 곤란해진 경우
 2.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순자산)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순자산)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3. 해당 각 특별계정의 운용대상이 소멸할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경우
- ② 회사는 제1항에서 정한 사유로 각 특별계정을 폐지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폐지사유, 폐지일까지의 계약자적립금과 함께 제33조(계약자의 펀드 선택 및 변경)에 따른 펀드별 투입비율 변경 및 제35조(계약자의 계약자적립금 이전)에 따른 계약자적립금 이전에 관한 안내문 등을 작성하여 통지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펀드별 투입비율 변경 및 계약자적립금의 이전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사가 유사한 펀드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2항에 따라 펀드별 투입비율 변경 및 계약자적립금의 이전을 요구한 경우에는 연간 횟수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제 7 관 계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제44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 ①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47조(해지환급금) 제2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9조(계약의 무효)에 따라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서면으로 동의를 한 피보험자는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 서면동의 철회로 계약이 해지되어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47조(해지환급금) 제2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45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예시】

입원특약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20일간 입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원확인서를 변조하여 입원일수 30일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회사는 입원일수 20일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47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46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파산선고】

파산신청에 의해 법원이 채무자의 파산원인을 인정하고 파산결정을 내리는 행위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제47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제47조【해지환급금】

-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은 계약이 해지된 날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0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에 따른 기본보험료의 감액 또는 제44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지환급금은 「해지신청일+제2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③ 해지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지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지환급금을 지급할 때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3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 따릅니다.
- ④ 해지환급금은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되므로 최저보증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일반계정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제38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하여 드립니다.
- ⑤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48조【계약자적립금의 인출】

- ① 계약자는 계약일 이후 1개월이 지난 후부터 회사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년도 기준 연 12회에 한하여 계약자적립금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으며, 1회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은 인출할 당시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의 50%를 최고 한도로 합니다. 다만, 보험계약 성립 전 계약자적립금의 인출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험년도】

당해연도 연계약해당일로부터 차년도 연계약해당일 전일까지 매1년 단위의 연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일이 2020년 8월 15일인 경우 보험년도는 8월 15일부터 차년도 8월 14일까지 1년이 됩니다.

【설명】

보험년도 1년 이내(계약일이 2020년 8월 15일인 경우, 8월 15일부터 차년도 8월 14일까지)에는 최대 12회에 한하여 언제든지 인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자적립금의 일부를 인출하기 위해서는 인출 직후 계약자적립금이 적립형의 경우 연간 기본보험료(월납 기본보험료의 12배)의 50%와 300만원 중 큰 금액이상이 되어야 하며, 거치형의 경우 일시납보험료의 20%이상 되어야 하며 이를 최소잔여적립금이라 합니다. 계약일부터 10년 이내에 인출하는 경우 계약일부터 각 인출시점까지의 인출금액의 합계는 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 총액(총 납입한 기본보험료와 총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기본보험료를 감액한 경우, 감액후 기본보험료와 기본보험료 감액비율과 동일비율로 감액된 추가납입보험료 및 계약자적립금의 인출금액을 적용합니다.

【계약자적립금의 인출 예시】

예) 적립형계약의 경우 해지환급금 560만원, 계약자적립금이 570만원일 경우

→ 최대인출 한도 적용시 해지환급금의 50%인 280만원이 최고한도이나, 인출 후 계약자적립금이 570만원 - 280만원 = 290만원으로 300만원 미만인 것으로 최대 270만원까지 인출이 가능합니다.

예) 거치형계약의 경우 해지환급금(계약자적립금 동일) 380만원, 일시납보험료 1,000만원일 경우

→ 최대인출 한도 적용시 해지환급금의 50%인 190만원이 최고한도이나, 인출 후 계약자적립금이 380만원 - 190만원 = 190만원으로 일시납보험료의 20%(200만원) 미만인 것으로 최대 180만원까지 인출이 가능합니다.

-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자적립금을 인출한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인출 직후 「이미 납입한 보험료」】

$$= \text{인출 직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 \times \frac{\text{인출 직전 계약자적립금} - \text{인출금액}}{\text{인출 직전 계약자적립금}}$$

(※ 인출 직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해당 인출 전에 인출 및 감액이 발생한 경우 제20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4항 및 상기 방법에 따라 계산된 이미 납입된 보험료를 말합니다.

- ④ 계약자적립금의 인출은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금에서 우선적으로 가능하며,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금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기본보험료의 계약자적립금에서 인출 가능합니다.
-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계약자적립금을 인출하는 경우 「인출신청일 + 제2영업일」에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일반계정으로 전환된 계약은 인출신청일기준으로 지급합니다.
- ⑥ 계약자적립금을 인출할 경우 계약자적립금에서 인출금액을 차감하므로 해지환급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제49조【보험계약대출】

-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 ②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제2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등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합니다.
- ④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50조【배당금의 지급】

이 계약은 무배당보험이므로 계약자배당금이 없습니다.

제 8 관 분쟁의 조정 등

제51조【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52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53조【소멸시효】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반환청구권, 해지환급금 청구권 및 책임준비금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소멸시효】

보험금 지급사유가 2020년 1월 1일에 발생하였음에도 2022년 12월 31일까지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시효가 완성되어 보험금 등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제54조【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와 성실을 가지고 행동하여 상대방의 신뢰와 기대를 배반하여서는 안된다는 원칙(「민법」 제2조 제1항)

【「민법」 제2조(신의성실) 제1항】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55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에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56조【보험계약의 변동사항 통지】

① 회사는 보험기간 동안 분기별로 계약의 변동내용을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혹은 보험기간 중 전자우편을 통하여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서면, 전화(음성녹음) 또는 인터넷 등으로 한 경우에는 전자우편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일반계정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의 경우 금융감독원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추가적인 사항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제57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소송을 제기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

회사가 보험수익자의 경제적·신체적·정신적인 어려움, 경솔함, 경험부족 등을 이용하여 동일· 유사 사례에 비추어 보험수익자에게 매우 불합리하게 합의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58조【개인정보보호】

- ①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제59조【준거법】

- ①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 ②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자산운용 관련 용어 및 사항은 관련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다만, 자산운용 관련 용어 및 사항은 관련법규 등이 제정 또는 개정될 경우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제60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이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최저사망보험금 및 예금자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전환된 계약에 한하여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예금자보호법」】

금융기관이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사망보험금 (제3조)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때	적립형	월납 기본보험료의 1,000% + 사망 당시 계약자적립금
		거치형	일시납 기본보험료의 10% + 사망 당시 계약자적립금

(주)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2. 계약자적립금은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개별 계약자 별로 배분된 금액 등을 말하며 특별계정의 평가 등에 의하여 매일 변동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일반계정으로 전환 된 후의 계약자적립금은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이 아닌 제38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에 따른 공시이율로 적립하여 드리며, 공시이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계약자적립금도 변경됩니다.
3. 상기 사망보험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최저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제2조(용어의 정의) 제5호의 '차'에서 정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다만, 일반계정으로 전환한 계약에 대하여 회사는 최저사망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4. 일반계정으로 전환한 계약의 사망보험금은 전환전 계약의 기본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별표 2 재해분류표

1.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감염병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으로 발병하거나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
- ② 사고의 원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
 - 과로 및 격심한 또는 반복적 운동(X50)
 - 무중력 환경에서의 장시간 체류(X52)
 - 식량부족(X53)
 - 물 부족(X54)
 - 상세불명의 결핍(X57)
 - 고의적 자해(X60~X84)
 - 법적 개입 중 법적 처형(Y35.5)
- ③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Y60~Y69)'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단, 처치 당시에는 재난의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에게 이상반응이나 합병증을 일으키게 한 외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Y83~Y84)는 보장)
- ④ '자연의 힘에 노출(X30~X39)'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 ⑤ '우발적 익사 및 익수(W65~W74), 기타 호흡과 관련된 불의의 위협(W75~W84), 눈 또는 인체의 개구부를 통하여 들어온 이물질(W44)' 중 질병에 의한 호흡장애 및 삼킴장애
- ⑥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U00~U99)에 해당하는 질병

(주)

- 1. () 안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15-309호, 2016.1.1. 시행)상의 분류번호이며, 제8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재해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해당 재해로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2.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재해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재해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재해의 해당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3. 감염병에 관한 법률이 제·개정될 경우, 보험사고 발생당시 제·개정된 법률을 적용합니다.

별표 3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제8조 제2항 및 제47조 제3항 관련)

구분	기간	지급이자
사망보험금 (제3조)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지급기일의 31일 이후부터 6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4.0%)
	지급기일의 61일 이후부터 9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6.0%)
	지급기일의 91일 이후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8.0%)
해지환급금 (제47조 제1항)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1년 이내: 공시이율의 50% 1년 초과기간: 1%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해지환급금 (제47조 제2항)	「해지신청일+제2영업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주)

1.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일자 계산하며, 제53조(소멸시효)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2.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등의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가산이율 적용시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 제3항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지연된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4. 가산이율 적용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5. 보험계약대출이율은 '사업방법서의 보험계약대출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공시이율은 회사가 판매 중인 금리연동형 저축보험의 공시이율을 적용합니다.

02. 무배당 연금전환특약II 목차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51
제1조【목적】.....	51
제2조【용어의 정의】.....	51
제2관 보험금의 지급.....	52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52
제4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52
제5조【보험금의 청구】.....	52
제6조【보험금의 지급절차】.....	53
제3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	53
제7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53
제8조【피보험자의 범위 및 자격의 득실】.....	54
제9조【특약의 보장개시】.....	54
제10조【특약의 무효】	54
제11조【특약의 보험기간】	55
제4관 보험료의 납입.....	55
제12조【특약 보험료의 납입】.....	55
제5관 특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55
제13조【계약자의 임의해지】	55
제14조【해지환급금】.....	55
제6관 기타사항 등.....	55
제15조【소멸시효】.....	55

제16조【전환전계약 약관의 준용】.....	55
-------------------------	----

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56
----------------------	----

별표 2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58
--------------------------------	----

02. 무배당 연금전환특약II 약관

※이 특약은 계약자의 선택에 의하여 전환시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이 경우 전환시점의 약관 및 보험요율을 적용하며 가입나이 또한 전환시의 나이를 적용합니다.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목적】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피보험자의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 나.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 다.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 라.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 마. 전환전계약: 이 특약으로 전환을 신청한 대상이 되는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2.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 가.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연단위 복리 예시】

원금 100원, 연간 10% 이자율 적용시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2년시점의 총 이자금액

· · 1년차 이자 = $\frac{100\text{원}}{\text{원금}} \times 10\% = 10\text{원}$

· · 2년차 이자 = $\frac{(100\text{원} + 10\text{원})}{\text{원금}} \times 10\% = 11\text{원}$
1년차 이자

⇒ 2년 시점의 총 이자금액 = 10원 + 11원 = 21원

- 나. 평균공시이율: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합니다. 평균공시이율은 회사의 홈페이지(www.hanalife.co.kr) 상품공시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다. 해지환급금: 특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3.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 가. 보험기간: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1) 종신연금형 및 상속연금형: 연금지급개시나이 계약해당일(전환일)부터 종신까지

(2) 확정연금형: 연금지급개시나이 계약해당일(전환일)부터 확정연금의 최종 지급일까지

-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 1. 일요일
- 2.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 3. 1월 1일
-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 5. 석제
- 6. 석가탄신일(음력 4월 8일)

7. 5월 5일(어린이날)
8. 6월 6일(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기독탄신일)
- 10의 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 ① 제2조 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 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 첫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 ② 제2조 제7호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 제7호에 따른 공휴일의 다음 첫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연금지급개시일부터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연금지급형태에 따라 매년 생존연금을 지급(중신연금형, 상속연금형)
2.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연금지급개시일부터 계약자가 선택한 기간의 매년 계약해당일: 연금지급형태에 따라 매년 연금을 지급(확정연금형)

제4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 ① 이 특약에 적용하는 이율은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로 하며, 매월 1일부터 당월 마지막 날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연금전환일로부터 10년이내에는 연복리 1.5%,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복리 1.0%로 합니다.

【최저보증이율】

운용자산이익률 및 시중금리가 하락하더라도 보험회사에서 보증하는 최저한도의 적용이율입니다. 예를 들어, 적립액이 공시이율에 따라 부리되며 공시이율이 0.5%인 경우 적립액은 공시이율(0.5%) 이 아닌 최저보증이율(계약일 이후 10년 이내에는 1.5%, 10년 초과시에는 1.0%)로 부리됩니다.

- ② 제1항의 공시이율은 이 특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내부지표와 외부지표를 가중평균하여 산출된 공시기준이율에서 장래 운용수익률,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한 조정률을 가감하여 결정합니다.
-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공시이율 및 산출방법 등을 매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공시이율의 공시】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hanalife.co.kr)의 ‘상품공시실’ 내 ‘전체상품 목록’에서 각 상품별로 공시하며, 적용되는 공시이율 및 산출방법 등은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의 ‘상품공시실’ 내 ‘적용이율 공시’에서 공시합니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피보험자의 주민등록등본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6조【보험금의 지급절차】

- ① 회사는 제5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 ② 회사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생존연금 또는 같은 조 제2호에서 정한 연금에 해당하는 보험금의 지급시기가 되면 지급시기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알려드리며,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별표2 보험금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과 같이 계산합니다.
-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5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신청

【설명】

분쟁조정신청은 전환전계약의 ‘분쟁조정신청’에 따르며, 분쟁조정신청 대상기관은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말합니다.

3. 수사기관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5. 제5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보험금 가지급제도】

지급기한 내에 보험금이 지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예상되는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 이는 피보험자가 당장 필요로 하는 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해 회사가 먼저 지급해주는 임시 급부금임

- ④ 제3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주계약 약관의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제1항 및 제3항의 보험금 지급사유 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 조사 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⑥ 회사는 제5항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시 조사목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명합니다.

제3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

제7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 ① 이 특약은 전환전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체결 후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전환전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 ② 계약자는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연금지급개시일 전일까지 연금지급개시시점을 선택하여야 하며, 또한 다음에 정한 연금지급형태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구분	내용		
연금지급 형태	종신연금형 (개인연금형, 부부연금형)	정액형	10년보증, 20년보증
	확정연금형	3년~5년, 10년, 15년, 20년	
	상속연금형		

- ③ 이 특약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 해당하는 연금의 지급이 완료된 경우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④ 제8조(피보험자의 범위 및 자격의 득실)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모두 사망 등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⑤ 제4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종선고】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 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청구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고 신분이나 재산에 관한 모든 법적 관계를 확정시키는 법원의 결정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 ①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 ②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 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 ⑥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그 이행은 제4항 사망의 원인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8조【피보험자의 범위 및 자격의 득실】

- ①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개인연금형, 부부연금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합니다.
 1. 개인연금형의 경우 전환전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2. 부부연금형의 경우 주피보험자는 전환전계약의 피보험자로 하며, 종피보험자는 주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로 합니다(이하 '주피보험자'와 '종피보험자'를 합하여 '피보험자'라 합니다).
- ② 부부연금형의 경우 종피보험자가 사망이외의 원인(이혼 등)으로 제1항 제2호의 배우자에 해당되지 않으면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더 이상 가지지 않으며, 피보험자는 연금지급형태를 개인연금형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개인연금형과 부부연금형의 연금계약 적립액 차액을 정산하며, 연금액은 전환시점부터 개인연금형으로 전환된 연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개인연금형으로 전환한 이후에는 이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보험약관에서 보장하는 위험에 대하여 보험료, 책임준비금 등이 적정하게 계산될 수 있도록 계산 방법을 기재한 서류입니다.

- ③ 부부연금형의 경우 새로이 제1항 제2호의 배우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그 해당된 날로부터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합니다. 그러나 종피보험자가 사망한 이후 새로이 제1항 제2호에 해당되는 배우자는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하지 않습니다.

제9조【특약의 보장개시】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자가 신청한 연금전환일로 합니다. 이 경우 특약의 보장개시일부터 전환전계약(부가된 특약 중 함께 전환하는 특약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제10조【특약의 무효】

이 특약을 체결할 때 특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특약으로 봅니다)에는 이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전환시 납입한 보험료를 말함)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특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계약 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11조【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종신연금형 및 상속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개시일부터 종신까지이며, 확정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개시일부터 이 특약의 부가시에 회사가 제시한 소정의 범위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제4관 보험료의 납입

제12조【특약 보험료의 납입】

이 특약의 보험료는 전환전계약의 지급금(해지환급금 또는 만기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입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5관 특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제13조【계약자의 임의해지】

-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다만, 종신연금형의 경우는 제외)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14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특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제14조【해지환급금】

- ① 이 특약에 따른 해지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② 해지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지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지환급금을 지급할 때 해지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2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 따릅니다.
- ③ 해지환급금 계산시 적용되는 공시이율은 제4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에서 정한 이율로 합니다. 이 때 적용되는 이율은 공시이율로 하고, 공시이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변경된 공시이율을 적용합니다.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연금전환일로부터 10년 이내 연복리 1.5%,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복리 1.0%를 적용합니다.

제6관 기타사항 등

제15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반환청구권, 해지환급금청구권 및 책임준비금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소멸시효】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른 보험금 지급사유가 2020년 1월 1일에 발생하였음에도 2022년 12월 31일까지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시효가 완성되어 보험금 등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제16조【전환전계약 약관의 준용】

-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전환전계약 약관을 따릅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환전계약의 약관 중 보험계약대출, 계약내용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생존 연금 (제3조 제1호)	종신연금 (개인연금형)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적립액을 기준으로 연금사망을 및 공시이율 을 적용하여 피보험자의 생존할 기간에 대해 나누어 계산한 후 계 약관리비용을 차감한 금액 - 보증기간: 10년, 20년
	종신연금 (부부연금형)	주 피보험자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적립액을 기준으로 연금사망을 및 공시이율 을 적용하여 주피보험자와 종피보 험자의 생존할 기간에 대해 나누 어 계산한 후 계약관리비용을 차 감한 금액 - 보증기간: 10년, 20년
		종 피보험자 주피보험자가 연금지급개시 이후에 사망하고 종피보험자가 연금지급개시시점부터 보증지급기간 이후에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주피보험자의 보증지급기간 최종년도 연금액의 동일액
	상속연금형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보험료에 대한 1년동안의 이자액에 서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한 금액 전환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의 계 약해당일부터 연금액 지급 * 피보험자가 사망시에는 사망당시 의 적립액을 지급하고 연금은 더 이상 지급하지 않음
연금 (제3조 제2호)	확정연금형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계약자가 선택한 확정연금지급기간의 매년 계약해당일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적립액을 기준 으로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약자 가 선택한 확정연금지급기간에 대 해 나누어 계산한 후 계약관리비용 을 차감한 금액 - 3년~5년, 10년, 15년, 20년

(주)

1.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적립액」은 연금지급개시나이 이전에 발생한 전환전계약의 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로 납입한 이 특약의 일시납 보험료를 말합니다.
2. 생존연금 및 연금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므로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매년 지급되는 생존연금 및 연금도 변경됩니다.
3. 공시이율이 연금개시시점의 공시이율과 계속 동일한 경우의 해당년도 연금액은 직전년도 연금액과 동일하나, 공시이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직전년도의 연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개시 전에 선택한 보증지급기간(10년, 20년)동안 연금개시후에 생존연금의 지급을 보증하며, 연금지급 개시 후 보증지급기간(10년, 20년)까지 지급되지 않은 생존연금을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
5. 종신연금형의 경우 보증지급기간(10년, 20년) 중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보증지급기간(10년, 20년)

까지 지급되지 않은 생존연금을 생존연금지급일에 드리거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

6. 확정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 개시 후 확정연금지급기간(3년~5년, 10년, 15년, 20년)까지 지급되지 않은 연금을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
7. 확정연금형의 경우 확정연금지급기간(3년~5년, 10년, 15년, 20년) 중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확정연금지급기간(3년~5년, 10년, 15년, 20년)까지 지급되지 않은 연금을 연금지급일에 드리거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
8. 상속연금형의 경우 이 특약의 보장개시일부터 1년이 지난 시점의 계약해당일부터 생존연금을 지급합니다.
9. 생존연금 및 연금을 매월, 3개월, 6개월로 나누어 지급할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10. 「공시이율」은 회사가 정한 이율로 매월 1일 적용합니다. 다만,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연금전환일로부터 10년 이내에는 1.5%,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복리 1.0%를 적용합니다.
11. 연금의 지급이 완료되었거나 보험기간 중 개인연금형은 피보험자, 부부연금형은 주피보험자 및 종피보험자의 모두 사망 등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별표 2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제6조 제2항 및 제14조 제2항 관련)

구분	기간	지급이자
생존연금, 연금 (제3조)	보험기간 만기일 이내	공시이율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1년 이내 : 공시이율의 50% 1년 초과기간: 1%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해지환급금 (제14조 제1항)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1년 이내 : 공시이율의 50% 1년 초과기간: 1%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주)

1. 생존연금 및 연금은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시기 도래 7일 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알리지 않은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은 공시이율을 적용한 이자를 지급합니다.
2. 지급이자는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금리연동형보험은 일자 계산합니다. 다만, 지급이자는 제15조(소멸시효)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3.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03. 표준하체인수특약 목차

제1조【목적】.....	61
제2조【용어의 정의】.....	61
제3조【특약의 체결】.....	61
제4조【특약의 내용】.....	61
제5조【특약의 부가조건】.....	61
제6조【특약의 보험기간 및 보험료의 납입】.....	63
제7조【특약내용의 변경 등】.....	63
제8조【해당계약 약관규정의 준용】.....	63
 별표 1 재해분류표	 64

03. 표준하체인수특약 약관

※ 이 특약은 계약자의 청약이 있고 회사가 이를 승낙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제1조【목적】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이 특약의 적용을 받는 주계약 또는 특약에서 정하는 피보험자의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 나.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 다.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 라. 주계약: 기본이 되는 보험계약으로 주된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 마. 해당계약: 이 특약의 적용을 받는 주계약 또는 특약을 말합니다.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 가. 재해: '별표1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를 말합니다.
3.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 가. 보험기간: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제3조【특약의 체결】

- ① 이 특약은 해당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가 보험회사가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해당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 ② 특약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해당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제4조【특약의 내용】

이 특약은 피보험자의 위험도가 높아 해당계약의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이 특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기간 중 위험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합니다.

제5조【특약의 부가조건】

- ① 이 특약에 따라 부가하는 계약조건은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위험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다음 중 한가지의 방법으로 부가합니다.
 1. 할증보험료법
할증위험률에 따른 보험료와 표준체 보험료와의 차액을 특약보험료라 하며 계약을 체결할 때 위험의 정도에 따라 표준체 보험료에 회사에서 정한 특약보험료를 더하여 납입보험료로 합니다. 이러한 경우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할증위험률】

피보험자의 건강상태가 회사가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일반위험률 보다 높게 적용되는 위험률

【표준체】

피보험자의 건강상태가 회사가 정한 기준에 적합한 피보험자를 말하며, 표준체에 대해서는 위험률을 할인 또는 할증하지 않고 계산한 보험료를 적용합니다.

2. 보험금감액법

계약일로부터 회사가 정하는 삭감기간 내에 피보험자에게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해당계약의 삭감대상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당계약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할 때에 정한 삭감기간 및 보험금지급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경과기간	기준	삭감기간 및 보험금지급비율				
		1년	2년	3년	4년	5년
1년미만	해당계약에서 정한 지급보험금	50%	30%	25%	20%	15%
1년이상 2년미만		100%	60%	50%	40%	30%
2년이상 3년미만		100%	100%	75%	60%	45%
3년이상 4년미만		100%	100%	100%	80%	60%
4년이상 5년미만		100%	100%	100%	100%	80%
5년이상		100%	100%	100%	100%	100%

그러나, 그 보험사고의 발생원인이 재해로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삭감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해당계약의 규정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종선고】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 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고 신분이나 재산에 관한 모든 법적 관계를 확정시키는 법원의 결정

【「민법」 제27조 (실종의 선고)】

- ①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 ②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 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3. 나이가산법

할증위험률에 따른 보험료가 표준체 보험료와 가장 가까운 나이간의 차이를 연증수라 합니다. 즉, 어떤 결함을 가진 피보험자의 위험지수가 실제 n세 높은 나이의 표준체와 같은 위험률을 나타낸다고 인정할 때 'n년증'이라 칭하고 n세 높은 나이의 표준체 보험료를 받아들이는 방법입니다.

4. 나이가산법과 보험금감액법을 병용할 수 있습니다.

- ②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그 이행은 제1항 제2호 '사망'의 원인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③ 제1항 제2호의 삭감기간은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위험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5년이내로 합니다. 또한 그 판단기준은 회사에서 정한 계약심사기준을 따르며, 개개인의 질병의 상태등에 대한 의사의 소견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심사기준】

질병, 직업, 건강진단 결과 등을 토대로 보험가입 거절,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등 조건부 인수여부를 결정하는 기준

-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계약에 부가된 조건을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제6조【특약의 보험기간 및 보험료의 납입】

- ①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해당계약의 보험기간과 동일합니다.
- ② 이 특약의 보험료는 해당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해당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해당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 ③ 해당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도 면제됩니다.

제7조【특약내용의 변경 등】

이 특약은 해당계약의 약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1. 보험기간 또는 보험료 납입기간의 변경
2. 감액완납 또는 연장보험으로의 변경

【감액완납】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중단하는 대신 가입금액을 감액하는 보험

【연장보험】

차회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중단하는 대신 정기보험(일정기간동안 사망을 보장하는 보험)으로 변경하는 보험

제8조【해당계약 약관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이 특약이 부가된 해당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별표 1 재해분류표

주계약 '무배당 ELS의 정석 변액보험'의 '별표 2 재해분류표'와 동일

04.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목차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67
제1조【목적】.....	67
제2조【용어의 정의】.....	67
제2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	67
제3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67
제3관 지정대리청구에 관한 사항.....	67
제4조【적용대상】.....	67
제5조【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67
제6조【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 지정】.....	68
제7조【지정대리청구인에 의한 보험금의 지급절차】.....	68
제8조【지정대리청구인에 의한 보험금의 청구】.....	68
제4관 기타사항	68
제9조【준용규정】.....	68

04.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약관

※ 이 특약은 계약자가 선택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목적】

이 특약은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과 관련해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에서 별도로 정한 제도를 적용하기 위하여 주된 보험계약(이하 ‘주계약’이라 합니다)에 부가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라.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마. 주계약: 기본이 되는 보험계약으로 주된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제2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

제3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① 이 특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부가됩니다.

② 제4조(적용대상)의 계약이 해지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이 없게 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제3관 지정대리청구에 관한 사항

제4조【적용대상】

이 특약의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및 특약에 적용됩니다.

제5조【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① 계약자는 주계약 및 특약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계약체결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1명을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이하 ‘지정대리청구인’이라 합니다)으로 지정(제6조(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 지정)에 의한 변경 지정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대리청구인은 보험금 청구시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1.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2.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3촌 이내의 친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이 지정된 이후에 제4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정된 지정대리청구인의 자격은 자동적으로 상실된 것으로 봅니다.

제6조[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 지정]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을 변경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변경 지정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지정대리청구인 변경신청서(회사양식)
2. 지정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제7조[지정대리청구인에 의한 보험금의 지급절차]

- ① 지정대리청구인은 제8조(지정대리청구인에 의한 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구비서류 및 제4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제4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가 보험금을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이후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회사는 이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8조[지정대리청구인에 의한 보험금의 청구]

지정대리청구인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4. 피보험자 및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5. 기타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4관 기타사항

제9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약관 내 인용 조문

- 아래 법령은 약관에서 인용된 법령으로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단, 가입하신 상품에 따라 인용된 법령이 다를 수 있는 점을 참고하셔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은 2020년 3월 기준이며, 해당 법령 개정시 내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래 법령과 실제 법령 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실제 법령 내용이 우선됩니다.

1. 「공직선거법」

제34조(선거일)

- ①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통령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7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2. 국회의원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5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3.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3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일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선거일 전일이나 그 다음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주의 수요일로 한다.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정신건강 관련 교육·상담,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교육·주거·근로 환경의 개선 등을 통하여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3. ‘정신건강복지센터’란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이하 ‘사회복지시설’이라 한다), 학교 및 사업장과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에서의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이하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이라 한다)을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가.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기관
 - 나. 제15조제6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4. ‘정신건강증진시설’이란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을 말한다.
5. ‘정신의료기관’이란 주로 정신질환자를 치료할 목적으로 설치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 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중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병원(이하 ‘정신병원’이라 한다) 또는 의원
 - 나.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로서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기관
6. ‘정신요양시설’이란 제22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서 정신질환자를 입소시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7. ‘정신재활시설’이란 제26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서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정신질환자등’이라 한다)의 사회적응을 위한 각종 훈련과 생활지도 등을 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 ①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
 2.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치료·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일상생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4.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 진단·판정, 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구체적인 종류와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4. 「보험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험상품’이란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 발생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대가를 수수(授受)하는 계약(「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등 보험계약자의 보호 필요성 및 금융거래 관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가. 생명보험상품: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사람의 생존 또는 사망에 관하여 약정한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 나. 손해보험상품: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다목에 따른 질병·상해 및 간병은 제외한다)으로 발생하는 손해(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법령상 의무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 다. 제3보험상품: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사람의 질병·상해 또는 이에 따른 간병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2. ‘보험업’이란 보험상품의 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험의 인수(引受), 보험료 수수 및 보험금 지급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생명보험업·손해보험업 및 제3보험업을 말한다.
3. ‘생명보험업’이란 생명보험상품의 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험의 인수, 보험료 수수 및 보험금 지급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4. ‘손해보험업’이란 손해보험상품의 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험의 인수, 보험료 수수 및 보험금 지급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5. ‘제3보험업’이란 제3보험상품의 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험의 인수, 보험료 수수 및 보험금 지급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6. ‘보험회사’란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7. ‘상호회사’란 보험업을 경영할 목적으로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서 보험계약자를 사원(社員)으로 하는 회사를 말한다.
8. ‘외국보험회사’란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의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에서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9. ‘보험설계사’란 보험회사·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에 소속되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법인이 아닌 사단(社團)과 재단을 포함한다)로서 제84조에 따라 등록된 자를 말한다.
10. ‘보험대리점’이란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법인이 아닌 사단과 재단을 포함한다)로서 제87조에 따라 등록된 자를 말한다.
11. ‘보험중개사’란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법인이 아닌 사단과 재단을 포함한다)로서 제89조에 따라 등록된 자를 말한다.
12. ‘모집’이란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대리하는 것을 말한다.
13. ‘신용공여’란 대출 또는 유가증권의 매입(자금 지원적 성격인 것만 해당한다)이나 그 밖에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보험회사의 직접적·간접적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거래를 말한다.
14. ‘총자산’이란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에서 미상각신계약비(未償却新契約費), 영업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5. ‘자기자본’이란 납입자본금·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자본조정은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의 합계액에서 영업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의 합계액을 뺀 것을 말한다.
16. ‘동일차주’란 동일한 개인 또는 법인 및 이와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17. ‘대주주’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주주를 말한다.
18. ‘자회사’란 보험회사가 다른 회사(「민법」 또는 특별법에 따른 조합을 포함한다)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의 그 다른 회사를 말한다.
19. ‘전문보험계약자’란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전문보험계약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일반보험계약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동의하여야 하며, 보험회사가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계약자는 일반보험계약자로 본다.

- 가. 국가
 - 나. 한국은행
 -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 라. 주권상장법인
 -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0. '일반보험계약자'란 전문보험계약자가 아닌 보험계약자를 말한다.

5. 「보험업법 시행령」

제6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등)

- ① 법 제2조제19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지방자치단체
 2. 주권상장법인
 3. 제2항제15호에 해당하는 자
 4. 제3항제15호, 제16호 및 제18호에 해당하는 자
- ② 법 제2조제19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1. 보험회사
 2.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3.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4.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5.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그 중앙회
 6.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연합회
 7.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8.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9.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10. 「은행법」에 따른 은행
 1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경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 다),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및 자금중개회사
 1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13.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1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기관에 준하는 외국금융기관
- ③ 법 제2조제19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지방자치단체
 2. 법 제83조에 따라 모집을 할 수 있는 자
 3. 법 제175조에 따른 보험협회, 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 및 법 제178조에 따른 보험 관계 단체
 4.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5.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
 6.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회사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 및 같은 법 제373조의2에 따라 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9.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10.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한국투자공사
 12.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13.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14. 법률에 따라 공제사업을 하는 법인
 15.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제12호와 제13호에 따른 기금은 제외한다) 및 그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
 16.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국내법인
 1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
 - 가. 외국 정부
 - 나. 조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구
 - 다. 외국 중앙은행
 - 라. 제1호부터 제15호까지 및 제18호의 자에 준하는 외국인
 18.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6. 「보험업감독규정」

제1-4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영 제6조의2제3항제18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7-49조제2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
2. 기업성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6.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
7. 제7-49조제2호가목1)에 해당하는 단체

7.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 제1항 제2호·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제6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의 동의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받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내용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명확히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하여야 한다.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3조 제1호 및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개인정보

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정보주체와의 계약 체결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와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개인정보를 구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때에는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제3항에 따라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을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 및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동의를 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세부적인 방법 및 제6항에 따른 최소한의 정보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수집·매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 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 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민감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처리할 수 없다.
 -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 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 2.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식별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종류·규모, 종업원 수 및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 ⑤ 행정자치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4항에 따른 조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8-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수집·조사 및 처리의 제한)

- ① 신용정보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조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국가의 안보 및 기밀에 관한 정보
 - 2. 기업의 영업비밀 또는 독창적인 연구개발 정보
 - 3. 개인의 정치적 사상, 종교적 신념, 그 밖에 신용정보와 관계없는 사생활에 관한 정보
 - 4. 확실하지 아니한 개인신용정보
 - 5. 다른 법률에 따라 수집이 금지된 정보
 -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 ②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의 질병에 관한 정보를 수집·조사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려면 미리 제32조 제1항에 따른 해당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만 그 정보를 이용하여야 한다.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 ①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때마다 미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존에 동의한 목적 또는 이용 범위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서면
2. 「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3.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내용 및 제공 목적 등을 고려하여 정보 제공 동의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유무선 통신으로 개인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
4. 유무선 통신으로 동의 내용을 해당 개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는 방법. 이 경우 본인 여부 및 동의 내용, 그에 대한 해당 개인의 답변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유지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사후 고지절차를 거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
- ②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을 때마다 개별적으로 동의(기존에 동의한 목적 또는 이용 범위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시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는 때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 ③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이 개인신용정보를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가 제2항에 따른 동의를 받았는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 ④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받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수적 동의사항과 그 밖의 선택적 동의사항을 구분하여 설명한 후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필수적 동의사항은 서비스 제공과의 관련성을 설명하여야 하며, 선택적 동의사항은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 ⑤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주체가 선택적 동의사항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신용정보주체에게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신용정보회사가 다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과 서로 집중관리·활용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2.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로서 제17조 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3. 영업양도·분할·합병 등의 이유로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면서 그와 관련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4. 채권추심(추심채권을 추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인가·허가의 목적, 기업의 신용도 판단, 유가증권의 양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5.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6. 범죄 때문에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심각한 위험 발생이 예상되는 등 긴급한 상황에서 제5호에 따른 법관의 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검사는 지체 없이 법관에게 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영장을 청구하여야 하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때부터 36시간 이내에 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면 지체 없이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를 폐기하여야 한다.
 7.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질문·검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관할 관서의 장이 서면으로 요구하거나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의 제공을 요구함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8. 국제협약 등에 따라 외국의 금융감독기구에 금융회사가 가지고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질서문란행위자 및 기업의 과점주주, 최대출자자 등 관련인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10.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 ⑦ 제6항 각 호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자 또는 제공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사전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또는 그 밖에 유사한 방법을 통하여 사후에 알리거나 공시할 수 있다.
- ⑧ 제6항제3호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범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⑨ 제8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 거래 중인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와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⑩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신원(身元)과 이용 목적을 확인하여야 한다.
- ⑪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제1항에 따라 미리 개별적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제33조(개인신용정보의 이용)

개인신용정보는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개인이 제32조 제1항 각 호의 방식으로 이 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목적에의 이용에 동

의한 경우

2. 개인이 직접 제공한 개인신용정보(그 개인과의 상거래에서 생긴 신용정보를 포함한다)를 제공받은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상품과 서비스를 소개하거나 그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제32조 제6항 각 호의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8-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 ②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법 제3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동의 방식의 특성상 동의 내용을 전부 표시하거나 알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나 사업장 전화번호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동의를 받을 수 있다.
 1.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3. 제공받는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4.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은 제외한다)의 정보 보유 기간 및 이용 기간
- ③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법 제3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유무선 통신을 통하여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 ④ 법 제32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정보 제공 동의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함으로써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여 동의를 받는 방식을 말한다.
- ⑤ 제4항의 방식으로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에 관한 동의를 받는 경우 신용정보제공·이용자와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정보 제공 동의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채택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1.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유형·특성·위험도
 2.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또는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의 업무 또는 업종의 특성
 3. 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야 하는 신용정보주체의 수
- ⑥ 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개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동의방식의 특성상 동의 내용을 전부 표시하거나 알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나 사업장 전화번호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동의를 받을 수 있다.
 1.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자
 2.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3. 제공받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4.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것에 대한 동의의 효력기간
- ⑦ 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은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가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았는지를 서면, 전자적 기록 등으로 확인하고, 확인한 사항의 진위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 ⑧ 법 제32조 제4항 전단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등이 필수적 동의사항과 그 밖의 선택적 동의사항을 구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신용정보주체가 그 동의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신용정보주체와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를 설정·유지할 수 없는지 여부
 2.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그 동의사항에 대하여 동의함으로써 제공·활용되는 개인신용정보가 신용정보회사등과의 상거래관계에 따라 신용정보주체에게 제공되는 재화 또는 서비스(신용정보주체가 그 신용정보회사등에 신청한 상거래관계에서 제공하기로 한 재화 또는 서비스를 그 신용정보회사등과 별도의 계약 또는 약정 등을 체결한 제3자가 신용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지 여부
 3. 신용정보주체가 그 동의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하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지 여부
- ⑨ 신용정보회사등이 법 제32조 제4항 전단에 따라 필수적 동의 사항과 그 밖의 선택적 동의사항을 구분하여 동의를 받는 경우 동의서 양식을 구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용정보주체가 각 동의사항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⑩ 법 제32조 제6항 제4호에서 '채권추심(추심채권을 추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인가·허가의 목적, 기업의 신용도 판단, 유가증권의 양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이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말한다.
 1. 채권추심을 의뢰한 채권자가 채권추심의 대상이 되는 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채권추심회사에 제공하거나 채권추

- 심회사로부터 제공받기 위한 목적
2. 채권자 또는 채권추심회사가 변제기일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채권추심의 대상이 되는 자에 대한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조회회사로부터 제공받기 위한 목적
 3. 행정기관이 인가·허가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신용조회회사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기 위한 목적
 4. 해당 기업과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그 기업의 대표자 및 제2조 제1항 제3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로부터 제공받기 위한 목적
 5. 제21조 제2항에 따른 금융기관이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또는 어음·수표 소지인이 어음·수표의 발행인, 인수인, 배서인 및 보증인의 변제 의사 및 변제자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로부터 어음·수표의 발행인, 인수인, 배서인 및 보증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기 위한 목적
 6. 「민법」 제450조에 따라 지명채권을 양수한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지명채권의 채무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거나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기 위한 목적
 - 가. 지명채권의 양도인이 그 지명채권의 원인이 되는 상거래관계가 설정될 당시 법 제3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채무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것에 대하여 해당 채무자로부터 동의를 받은 경우
 - 나.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그 지명채권의 채무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
- ⑪ 법 제32조 제6항 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질서문란행위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부정한 목적으로 다른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식별정보(제29조에서 정하는 정보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이용하여 금융거래 등 상거래를 하거나 그 상거래를 하려는 타인에게 자신의 개인식별정보를 제공한 자
 2. 부정한 목적으로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위조·변조되거나 허위인 신용정보를 제공한 자
 3. 대출사기, 보험사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한 거래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를 한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간이회생절차개시결정·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파산선고 또는 이와 유사한 결정이나 판결을 받은 자
 5. 그 밖에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 ⑫ 신용정보회사등이 법 제32조 제7항 본문에 따라 신용정보주체에게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사전에 알리는 경우와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후에 알리거나 공시하는 경우에 그 제공의 이유 및 그 알리거나 공시하는 자별로 알리거나 공시하는 시기 및 방법은 별표 2의2와 같다.
- ⑬ 법 제32조 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5조 제1항 제1호부터 제21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 ⑭ 법 제32조 제8항에서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범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공하는 개인신용정보의 범위, 제공받는 자의 신용정보 관리·보호 체계를 말한다.

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운동기능장애의 측정)

- ① 비장애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기능영역은 별표 4와 같다.
- ② 운동기능장애의 정도는 미국의학협회(AMA, American Medical Association)식 측정 방법 중 공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된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기능영역과 별표 4의 평균 운동기능영역을 비교하여 판정한다. 다만, 척주의 운동기능영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2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기능영역을 측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1. 강직, 오그라들, 신경손상 등 운동기능장애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 근로자의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
 2. 운동기능장애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자의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

10.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다만, 위원장은 제1호 또는 제2호의 자 중

에서 임명한다.

1.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에서 각각 추천하는 자
 2.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
 3.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4.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보건의료와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5. 보건의료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소속 5급 이상의 공무원
- ④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5호에 따른 공무원의 경우에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 ⑤ 위원의 자리가 빈 때에는 새로 위원을 임명하고,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
- ⑥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 전문평가위원회를 둔다.
- ⑦ 그 밖에 위원회·전문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1. 「소득세법」

제20조의3(연금소득)

- ① 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이하 "공적연금소득"이라 한다)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계좌["연금저축"의 명칭으로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연금저축계좌"라 한다) 또는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퇴직연금계좌"라 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형태 등으로 인출(이하 "연금수령"이라 하며, 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연금외수령"이라 한다)하는 경우의 그 연금
 - 가. 제146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 나. 제59조의3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 다.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 라. 그 밖에 연금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되어 해당 금액에 대한 소득세가 이연(移延)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3. 제2호에 따른 소득과 유사하고 연금 형태로 받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 ② 공적연금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는 연금소득으로 한다.
- ③ 연금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제2항에 따라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과 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연금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의2에 따른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 ④ 연금소득의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연금계좌 등)

- ① 법 제20조의3 제1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연금저축'의 명칭으로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란 제1호에 해당하는 계좌를 말하고,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란 제2호에 해당하는 계좌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이하 "연금저축계좌"라 한다)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신탁업자와 체결하는 신탁계약
 -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투자중개업자와 체결하는 집합투자증권 중개계약
 - 다. 제25조 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을 취급하는 기관과 체결하는 보험계약
 2.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가입하여 설정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좌(이하 "퇴직연금계좌"라 한다)
 - 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9호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설정하는 계좌
 - 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10호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설정하는 계좌
 - 다.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계좌
- ② 연금계좌의 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법 제59조의3제1항에 따른 연금계좌 납입액(제118조의3에 따라 연금계좌에 납입한 것으로 보는 금액을 포함하며, 이하 "연금보험료"라 한다)으로 볼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이내(연금계좌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합계액을 말한다)의 금액을 납입할 것.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 이전의 연금보험료는 납입할 수 없으나,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최종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년 2개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그 동안의 연금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다.
 - 가. 연간 1천800만원

나. 법 제59조의3제3항에 따른 전환금액[「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이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 한다)의 계약기간 만료일 기준 잔액을 한도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 만료일 기준 잔액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을 말한다]

2.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연금수령 개시일을 사전에 약정한 경우에는 약정에 따른 개시일을 말한다) 이후에는 연금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것
- ③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형태 등으로 인출"이란 연금계좌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인출하거나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인출(이하 "연금수령"이라 하며, 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연금외수령"이라 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법 제20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의 퇴직소득을 제20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해외이주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퇴직소득을 연금계좌에 입금한 날부터 3년 이후 해외 이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금수령으로 본다.
 1. 가입자가 55세 이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후 인출할 것
 2. 연금계좌의 가입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인출할 것. 다만,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금액(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서 직접 인출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이연퇴직소득"이라 한다)이 연금계좌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과세기간 개시일(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로 한다) 현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하 "연금수령한도"라 한다) 이내에서 인출할 것. 이 경우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인출한 금액은 인출한 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frac{\text{연금계좌의평가액}}{(11 - \text{연금수령연차})} \times \frac{120}{100}$$
- ④ 제3항 제3호의 계산식에서 "연금수령연차"란 최초로 연금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기산연차로하여 그 다음 과세기간을 누적 합산한 연차를 말하며, 연금수령연차가 11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계산식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기산연차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한 연금계좌[2013년 3월 1일 전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이하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라 한다)에 가입한 사람이 퇴직하여 퇴직소득 전액이 새로 설정된 연금계좌로 이체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경우: 6년차
 2.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연금계좌를 승계한 경우: 사망일 당시 피상속인의 연금수령연차
- ⑤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여 인출하는 금액은 연금외수령하는 것으로 본다.
- ⑥ 연금계좌 가입자가 연금수령개시 또는 연금계좌의 해지를 신청하는 경우 연금계좌취급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금수령개시 및 해지명세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⑦ 삭제 <2015.2.3.>
- ⑧ 삭제 <2015.2.3.>
- ⑨ 삭제 <2015.2.3.>
- ⑩ 삭제 <2015.2.3.>
- ⑪ 삭제 <2015.2.3.>

제40조의3(연금계좌의 인출순서 등)

- ① 연금계좌에서 일부 금액이 인출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이 순서에 따라 인출되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20조의3 제1항 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이하 "과세제외금액"이라 한다)
 2. 이연퇴직소득
 3. 법 제20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
- ② 과세제외금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인출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제3호는 제201조의10에 따라 확인되는 금액만 해당하며, 확인되는 날부터 과세제외금액으로 본다.
 1. 인출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2. 해당 연금계좌만 있다고 가정할 때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된 연금보험료로서 법 제59조의3제1항 단서에 따른 연금계좌세액공제의 한도액(이하 이 조에서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중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금액
- ③ 인출된 금액이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금수령분이 먼저 인출되고 그 다음으로 연금외수령분이 인출되는 것으로 본다.
- ④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중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액 이내의 연금보험료는 납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납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경우에는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부터 제1항제3호 중 법 제20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으로 본다.
- ⑤ 연금계좌의 운용에 따라 연금계좌에 있는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경우 연금계좌에 있는 금액은 원금이 제1항에 따른 인출순서와 반대의 순서로 차감된 후의 금액으로 본다.

1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조(회생절차폐지 등에 따른 파산선고)

- ① 파산선고를 받지 아니한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계획인가가 있는 후 회생절차폐지 또는 간이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법원은 그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하여야 한다.
- ② 파산선고를 받지 아니한 채무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 법원은 그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채무자 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할 수 있다.
 1. 회생절차개시신청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결정(제293조의5제2항제2호가목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회생계획인가 전 회생절차폐지결정 또는 간이회생절차폐지결정(제293조의5제3항에 따른 간이회생절차폐지결정 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회생절차가 속행된 경우는 제외한다)
 3. 회생계획불인가결정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선고를 한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은 파산의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과 함께 하여야 한다.
 1. 제23조제1항, 제24조제4항·제5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촉탁
 2. 제27조에서 준용하는 제24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촉탁
-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제3편(파산절차)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파산선고 전에 지급의 정지 또는 파산의 신청이 없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지급의 정지 또는 파산의 신청으로 보며, 공익채권은 재단채권으로 한다.
 1.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
 2. 제650조의 사기파산죄에 해당하는 법인인 채무자의 이사(업무집행사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행위
- ⑤ 회생계획인가결정 전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제3편(파산절차)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2편(회생절차)에 의한 회생채권의 신고, 이의와 조사 또는 확정은 파산절차에서 행하여진 파산채권의 신고, 이의와 조사 또는 확정으로 본다. 다만, 제134조 내지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의 이의, 조사 및 확정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관리인 또는 보전관리인이 수행하는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파산관재인 또는 그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다.
- ⑦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제2편(회생절차)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절차에서 행하여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처분·행위 등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파산절차에서도 유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유효한 것으로 보는 처분·행위 등의 범위를 파산선고와 동시에 결정으로 정할 수 있다.
 1. 법원
 2. 관리인·보전관리인·조사위원·간이조사위원·관리위원회·관리위원·채권자협의회
 3. 채권자·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주식회사가 아닌 회사의 사원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4. 그 밖의 이해관계인
- ⑧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파산절차가 효력을 잃은 후 제288조에 따라 회생절차폐지결정 또는 간이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하여야 한다.
- ⑨ 제8항의 경우 제3편(파산절차)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효력을 잃은 파산절차에서의 파산신청이 있을 때에 파산신청이 있는 것으로 보며, 공익채권은 재단채권으로 한다.
- ⑩ 제3항·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은 제8항의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